

2017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하재

## 2017년도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보고

---

2017. 11.



# 목 차

<b>I. 감사실시 개요</b> .....	<b>1</b>
1. 감사배경 및 목적.....	1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1
3. 감사 중점사항.....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b>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b> .....	<b>2</b>
1. 조직 및 인력.....	2
2. 2017년 업무추진 실적.....	2
3. 2016년 업무추진 실적.....	2
<b>III. 감사결과</b> .....	<b>3</b>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	4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5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b> .....	<b>10</b>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제도개선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0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11
<b>V. 기타사항</b> .....	<b>11</b>
1. 향후 처리계획.....	11
2.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및 마감회의.....	11

# I . 감사실시 개요

---

## 1. 감사배경 및 목적

이번 감사는 ○○지역본부 및 관내지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서 ○○지역본부와 관내지사 업무전반에 걸쳐 업무처리의 합법성·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 2. 감사대상 기관 및 범위

○○지역본부 및 관내 ●●지사 등 5개 지사에 대하여 감사일까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하였다.

## 3. 감사 중점사항

이번 감사는 ○○지역본부와 관내 지사의 주요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 미수수료 관리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는 한편 특히 사업인력운영의 적정성과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취약하게 나타난 부문에 대한 조기점검으로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모범 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7.10.17.부터 같은 해 10.27.까지 9일간 9명의 감사인력(연 인원 52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이후 감사실의 감사심의조정회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 II. 감사대상 기관 주요 현황

### 1. 조직 및 인력

○ 조 직: 본부(3처) 지사(19개지사)

○ 인 력

2017. 9. 30. 현재

정 원	현 원					측량 팀수	비 고
	계	정 규	담당관	보조인력	청년인턴		
355	365	326	7	27	5	86	행정 20명 고객 25명

### 2. 2017년 업무추진 실적

2017. 9. 30. 현재

(단위: 필/백만 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186,272	44,000	123,476	33,609	66.3	76.4
일반업무	75,160	27,239	61,031	20,896	81.2	76.7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111,112	16,761	62,445	12,713	56.2	75.8

### 3. 2016년 업무추진실적

(단위: 필/백만 원/%)

구 분 업무명	목 표		실 적		비 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280,640	42,600	203,896	44,847	72.7	105.3
일반업무	72,426	26,166	87,835	27,322	121.3	104.4
특수업무 (부대업무포함)	208,214	16,434	116,061	17,525	55.7	106.6

### Ⅲ. 감사결과

---

#### 1. 총 평

○○지역본부 및 ●●지사 등 5개 지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정하였다.

「고객만족경영과 미래성장동력사업 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적측량업무 부가가치 향상”, “고객중심 경영추구”, “국토공간정보사업 역량 강화”, “지속가능 경영” 이라는 전략 목표와 세부실천계획을 세우고 비전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Speed-Up 지원팀’을 편성하여 본부를 3권역으로 나누고 업무처리 경고 단계에 따라 본부에서 권역별 업무 이관 및 인력지원 등 일괄 업무지시로 미결업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본부 운영을 바탕으로 고객만족도 전국1위 및 6년 연속 흑자의 운영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현장중심의 직장 및 CS교육으로 직원 역량 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2016년도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평가에서 청렴 최우수기관 수상(1위)의 영예를 안는 등 반부패 청렴이미지 제고에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사업 분야는 '16년도에 다양한 공간정보사업을 수행하였고, 본부단위 특성화 사업으로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 공간정보 기반 신기술 협력사업’과 전사적 해외사업인 ‘◇◇◇ 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사업규모 227억 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사업 추진 실적 향상, 신규사업 제안 활성화, 지역 맞춤형 사업 확대, 국민체감형 공간정보 제공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공간정보 시장 개척과 공간정보 1등 본부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고객 및 지역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공헌활동(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헌 옷 기부, 사회복지관 배식봉사 및 기부금 전달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사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 하였고, 홍보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언론 매체와도 유기적인 관계유지 및 활동을 인정받아 '16년 홍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전 직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사, 국민에게 한걸음 먼저 다가가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본부로 거듭나고 있다.

다만 이번 종합감사 결과 본부에서는 지적측량수수료 보전 대책 및 성과도 교부 소홀 등 8건(◆◆◆◆원 교차감사 1건 포함), ●●지사 등 5개 지사에서는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등 6건으로 총 1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본부 및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직장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문서 지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명, 원)

구분	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현지 처분	모범 사례
		통보	시정	개선	권고	추징	회수	지급	징계	문책 (주의요구)		
건수	14 (7)	8					6			(2명)	(7)	7
금액	63,676,700						63,676,700					

※ ( )는 현지처분임, ◆◆◆◆원 교차감사 1건 포함, 신분상 조치는 감사기준시행세칙의 주의요구(2명)로 시정요구(회수)와 같이 처분한 내용임.

### 3. 분야별 지적사항 요약

#### 가. 지적행정 분야

**14-1**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지적측량수수료 보전대책 및 성과도 교부 소홀

##### < 요약 >

「업무규정」 제10조

##### ○ 지적측량수수료 보전 대책 및 성과도 교부 소홀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장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접수하면서 업무의 총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용자대상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보전대책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미수수료 수입 후 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수료수가 존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과도를 교부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4-2** 공부정리분 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관리 소홀

##### < 요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업무규정시행규칙」

##### ○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소홀

-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 및 발급 받은 지적측량성과도 263건을 교부처리 하지 않음
- 그 중 176건은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됨.

### 14-3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소홀

#### < 요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물 등록 관리(□□□□처-3616; 2015.12.08.)

#### ○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소홀

-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성과물 등록 파일(GDB 3종: ①일필지측량파일 ②경계결정위원회 상정 파일 ③최종 결정 파일)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시 ■■■■ ■지구를 제외한 26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의 성과물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14-10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서비스 소홀

#### < 요약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 제2항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행 알림(▽▽▽▽실-5773; 2016.12.30.)

#### ○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및 실시 소홀

- 이메일 교부 시범운영 및 시행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실적이 7건에 불과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함.

### 14-11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 부적정

#### < 요약 >

「업무규정」

#### ○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성과도 교부

-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수수료 전액을 수입 후 성과도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사전 교부
- 장기 미수수료 57,865,400원 발생

## 14-12

### 지적등록전환 업무처리에 따른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소홀

#### < 요약 >

「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

○ 등록전환 측량업무 토지·임야 접합도 미작성

- 2017년 80건 미 작성

\* MOS시스템에 토지·임야 접합도」를 등록하여 관리 하지 않아 후속 측량 시 임야 이동량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기 어려움

## 14-14

###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소홀

#### < 요약 >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20조, 제38조

○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야 하나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도 미등록

\* 지적측량성과협의회 미개최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미등록 14건

## 나. 회계사무 및 예산관리 분야

## 14-5

### 특근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 요약 >

「급여규정」 제6조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과다 지급

- 매월 말일 기준 개인별 초과근무 신청에 따른 관리자 승인 현황 및 근태기록을 확인하고, 특근명령부를 근거로 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51명에게 과다 지급함.

## 14- 6 주민세(법인균등분) 과다 납부

### < 요약 >

「지방세법」 제78조

#### ○ 주민세(법인균등분) 과다 납부

- 지방세인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납부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경우 ‘그 밖의 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세무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음.

\* ◀◀지사 등 9개소 과다 납부분 1,980,000원 회수 조치

## 14- 7 구매규격 사전공개 소홀(◆◆◆◆원 교차 감사)

### < 요약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경쟁 입찰을 통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여 입찰 참여자의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미 실시 함.

## 14- 8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 < 요약 >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함에도 운임을 일반적이지 않는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의 아님에도 지급함. (▶▶지사 471,110원 회수)

## 14- 9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 < 요약 >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에도 운임을 일반적이지 않는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도하게 지급함. (282,400원 회수)

## 14-13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 < 요약 >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

-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함에도 운임을 일반적이지 않는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도하게 지급하였으며,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이 아님에도 지급함. (352,400원 회수)

## 다. 일반행정 분야

## 14- 4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 소홀

### < 요약 >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차량관리지침」

- 업무용 임차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 2013년 이후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속도위반 142회, 신호·지시, 주·정차 위반 49회 등 191회를 위반하였으며, 4회 이상 위반자는 5명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업무용 임차차량을 통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사무실 주차의 경우 반드시 부착하여야 할 홍보스티커 및 청렴스티커 부착을 소홀히 하였음.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1. 행정상·재정상·신분상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명, 원)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 명	처분요구			조치기한	비고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주의요구)		
14- 1	△△△△처	지적측량수수료 보전 대책 및 성과도 교부 소홀	통보			1개월	
14- 2	△△△△처	공부정리분 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14- 3	△△△△처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소홀	통보			1개월	
14- 4	△△△△처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 소홀	통보			1개월	
14- 5	▲▲▲▲처	특근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2,719,390		1개월	
14- 6	▲▲▲▲처	주민세(법인균등분)과다 납부	시정요구	회수 1,980,000		1개월	
14- 7	▲▲▲▲처	구매규격 사전공개 소홀(◆◆◆◆원)	통보			1개월	
14- 8	▲▲▲▲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지사)	시정요구 주의요구	회수 471,110원	1명	1개월 20일	
14- 9	●●지사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282,400원		1개월	
14-10	◎◎지사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서비스 소홀	통보			1개월	
14-11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 부적정	시정요구 주의요구	회수 57,865,400	1명	1개월 20일	
14-12	◁◁지사	등록전환 업무처리에 따른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소홀	통보			1개월	
14-13	◁◁지사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	회수 352,400원		1개월	
14-14	♣♣지사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소홀	통보			1개월	
계		14건		63,670,700	2명		

※ 처분요구: 14건<통보 8건, 시정요구 6건(주의요구 2)>

### 1-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목	처분내역				
	조치양정	소속	직급	성명	관련지적사항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 부적정	주의요구	◁◁지사	국토정보직 0급	○○○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 부적정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주의요구	▶▶지사	국토정보직 0급	○○○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 1-2. 제도 개선 처분요구 명세

처분지시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감사자

## 2. 현지조치사항 일람표

(단위: 건, 원)

일련번호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제 목	조치사항	금액	비고
7-1	△△△△처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민원업무처리 소홀	현지통보		
7-2	▲▲▲▲처	근태관리 소홀	현지통보		
7-3	●●지사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연기(서면) 처리 소홀	현지통보		
7-4	●●지사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처리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 소홀	현지통보		
7-5	◎◎지사	최종퇴실점검부 작성 소홀	현지통보		
7-6	▷▷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과목 적용 소홀	현지통보		
7-7	♣♣지사	지적측량종목변경 업무 처리 소홀	현지통보		
계		7건			

## V. 기타사항

### 1. 향후 처리계획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처분 요구하고, 사후 이행 관리 점검 실시

### 2.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및 감사결과 마감회의

-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 및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사진	사진
상임감사 반부패 · 청렴교육(본부, ◎◎지사)	

사진	사진
상임감사 반부패 청렴교육(▷▷지사) 및 감사결과 마감회의	

- 붙임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교차감사 포함) 14부.  
 2. 현지조치(처분)서 7부.  
 3. 모범사례 7부. 끝.

일련번호	14 - 1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〇〇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보전 대책 및 성과도 교부 소홀

**관 계 기 관** 〇〇지역본부 △△△△처

**내 용**

〇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고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수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업무규정」 제10조(수수료의 수입) 제2항에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특수 업무의 계약체결 시 수수료를 전액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총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용자대상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한하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같은 조 제5항에는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미수수료 수입 후 성과도를 고객에게 교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본부에서는 계약, 서면, 의뢰서 등으로 지적측량업무를 접수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수입한 후 업무를 처리하거나, 위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수입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인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미수수료 수입 후 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장법인이 아닌 일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접수하면서 업무의 총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용자대상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보전대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미수수료 수입 후 성과도를 교부하여야 하나 미수수료가 존재하는 업무에 대하여 성과도를 교부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수입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업무규정」에서 적용되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시행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규정」에서 적용되는 수수료 수입에 대

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시행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보전 대책 및 성과도 교부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한 채권보전 대책 수립 대상 업무 현황(단위: 원, 부가세미포함)

기관명	접수일자	총계정	종목	기관구분	수수료 수입 현황			비고
					선수금	완료 전 수수료수입	성과도교부시 미수수료	
♡♡동부지사	20170101	1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7,444,800		52,813,200	
♡♡동부지사	20170101	5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4,650,000		7,225,000	
♡♡동부지사	20170306	34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0	97,000	0	
♡♡동부지사	20170905	88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824,000	
♡♡동부지사	20170101	1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동부지사	20170101	6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4,086,000		36,778,000	
♡♡동부지사	20170516	27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97,000		0	
♡♡동부지사	20170101	3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12,000,000		13,366,000	
♡♡동부지사	20170101	6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46,223,000		230,000,000	
♡♡동부지사	20170330	52	택지예정좌표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101	3	택지예정좌표	기타-사업자	0		25,603,000	
♡♡서부지사	20170630	68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630	69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630	70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710	71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717	77	경계복원	기타-사업자	0		1,791,000	
♡♡서부지사	20170725	78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731	84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0		4,164,000	
♡♡서부지사	20170101	1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101	3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101	4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125	14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0		868,000	
♡♡서부지사	20170518	44	경계복원	기타-사업자	0		1,285,000	
♡♡서부지사	20170630	52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725	56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384,000	
♡♡서부지사	20170725	57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4,932,000	
♡♡서부지사	20170725	58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서부지사	20170803	60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0		4,472,000	
♡♡서부지사	20170929	68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2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3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908	192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2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5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7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6,808,000	2,291,000	2,375,000	
♣♣지사	20170101	11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3,583,000		2,575,000	
♣♣지사	20170210	33	도시계획선명시	기타-사업자	17,914,000		3,249,000	
♣♣지사	20170621	158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788,000	
♣♣지사	20170906	230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11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2,085,000		21,148,000	
○○지사	20170101	12	기초(도근)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607	146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77,521,000	
○○지사	20170727	201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26,482,000		7,272,000	
○○지사	20170825	227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918	243	용역(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919	246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605	181	경계복원	기타-사업자	0		767,000	
◀◀지사	20170615	198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0		97,000	
▶▶지사	20170101	5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18,869,000		3,734,000	
▶▶지사	20170523	180	용역(구획정리)	기타-사업자	0		7,079,000	
▶▶지사	20170601	202	택지예정좌표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01	1	확정(구획정리)	기타-사업자	38,363,564		89,594,436	
⊙⊙지사	20170518	122	택지예정좌표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125	15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0		97,000	
▷▷지사	20170322	47	분할측량	기타-사업자	0		879,000	
▷▷지사	20170609	96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0		97,000	
▷▷지사	20170621	111	부대기타	기타-사업자	0			미결
▷▷지사	20170823	149	지적현황	기타-사업자	0		223,000	

\* 자료: 지적측량업무시스템(COS) 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14 - 2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공부정리분 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관내지사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한 고객에게 업무가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하고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제1항에 따르면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측량성과 및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업무규정시행규칙」 제22조(성과도 수령 및 교부) 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지적측량성과도 수령일은 제8조에 따른 완료일자로 하고, 교부일은 의뢰인에게 교부한 날짜를 입력하며,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등의 사항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적측량성과도 송부명세서에 따라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본부 ▶▶지사에서는 [별표] 현황과 같이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 및 발급 받은 지적측량성과도 263건의 교부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그 중 176건은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는 등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에도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교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업무규정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성과도 교부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시행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으며, 관련 업무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지적측량성과 검사결과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통지 및 발급 받은 지적측량성과도 263건과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성과도 176건을 의뢰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처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지적공부정리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미처리 현황(완료기준일: 2017. 9. 30.)

(○○지역본부 ▶▶지사)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공부정리완료일자	교부처리	비고
1	분할측량	43	2017-01-10	2017-01-19	2017-02-08	X	
2	분할측량	40	2017-01-10	2017-01-20	2017-06-22	X	
3	분할측량	44	2017-01-11	2017-01-24	-	X	
4	분할측량	64	2017-01-20	2017-02-01	2017-07-31	X	
5	분할측량	55	2017-01-17	2017-02-03	2017-02-21	X	
6	분할측량	78	2017-02-01	2017-02-10	2017-02-21	X	
7	분할측량	74	2017-01-31	2017-02-10	2017-02-13	X	
8	등록전환	7	2017-02-02	2017-02-10	-	X	
9	분할측량	79	2017-02-01	2017-02-10	-	X	
10	분할측량	91	2017-02-06	2017-02-16	2017-03-08	X	
11	등록전환	10	2017-02-07	2017-02-21	2017-03-24	X	
12	분할측량	104	2017-02-09	2017-02-21	2017-02-27	X	
13	분할측량	99	2017-02-07	2017-02-21	2017-03-24	X	
14	분할측량	69	2017-01-25	2017-02-21	2017-03-14	X	
15	분할측량	102	2017-02-08	2017-02-21	2017-03-17	X	
16	분할측량	82	2017-02-02	2017-02-21	-	X	
17	분할측량	112	2017-02-13	2017-02-24	2017-03-16	X	
18	분할측량	105	2017-02-09	2017-02-24	2017-02-24	X	
19	분할측량	118	2017-02-14	2017-02-24	2017-03-02	X	
20	분할측량	117	2017-02-14	2017-02-27	2017-06-12	X	
21	분할측량	124	2017-02-15	2017-02-28	-	X	
22	분할측량	116	2017-02-14	2017-02-28	2017-03-02	X	
23	분할측량	68	2017-01-25	2017-03-02	2017-04-24	X	
24	분할측량	123	2017-02-15	2017-03-03	2017-03-08	X	
25	분할측량	115	2017-02-14	2017-03-03	2017-03-28	X	
26	분할측량	128	2017-02-17	2017-03-03	2017-03-28	X	
27	분할측량	145	2017-02-23	2017-03-08	2017-07-28	X	
28	분할측량	136	2017-02-21	2017-03-09	2017-03-20	X	
29	분할측량	129	2017-02-17	2017-03-09	-	X	
30	분할측량	51	2017-01-12	2017-03-10	-	X	
31	분할측량	48	2017-01-11	2017-03-10	2017-03-08	X	
32	분할측량	134	2017-02-20	2017-03-10	2017-04-18	X	
33	등록전환	4	2017-01-12	2017-03-10	-	X	
34	분할측량	131	2017-02-17	2017-03-13	2017-02-15	X	
35	분할측량	161	2017-03-02	2017-03-13	2017-06-02	X	
36	분할측량	141	2017-02-22	2017-03-13	2017-03-17	X	
37	분할측량	167	2017-03-03	2017-03-15	2017-03-21	X	
38	분할측량	157	2017-03-02	2017-03-15	2017-03-17	X	
39	분할측량	178	2017-03-08	2017-03-15	2017-03-16	X	
40	분할측량	158	2017-03-02	2017-03-15	-	X	
41	분할측량	177	2017-03-08	2017-03-16	2017-03-20	X	
42	분할측량	179	2017-03-08	2017-03-21	-	X	
43	분할측량	183	2017-03-10	2017-03-21	2017-06-15	X	
44	분할측량	170	2017-03-07	2017-03-24	-	X	
45	분할측량	171	2017-03-07	2017-03-24	2017-04-03	X	
46	분할측량	203	2017-03-16	2017-03-27	-	X	
47	분할측량	172	2017-03-07	2017-03-27	2017-04-05	X	
48	분할측량	180	2017-03-09	2017-03-28	2017-03-31	X	
49	분할측량	209	2017-03-21	2017-03-29	2017-04-05	X	
50	분할측량	191	2017-03-15	2017-04-04	-	X	
51	분할측량	215	2017-03-28	2017-04-05	2017-04-17	X	
52	분할측량	219	2017-03-29	2017-04-05	2017-04-14	X	
53	분할측량	206	2017-03-20	2017-04-06	2017-04-14	X	
54	분할측량	198	2017-03-16	2017-04-07	2017-04-24	X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공부정리완료일자	교부처리	비고
55	분할측량	210	2017-03-21	2017-04-10	2017-04-18	X	
56	분할측량	186	2017-03-13	2017-04-11	2017-06-27	X	
57	분할측량	213	2017-03-28	2017-04-13	2017-04-21	X	
58	분할측량	241	2017-04-05	2017-04-17	-	X	
59	분할측량	227	2017-03-31	2017-04-17	2017-05-10	X	
60	분할측량	226	2017-03-31	2017-04-17	2017-05-10	X	
61	분할측량	197	2017-03-15	2017-04-17	2017-04-21	X	
62	분할측량	230	2017-04-03	2017-04-18	2017-04-28	X	
63	분할측량	221	2017-03-29	2017-04-18	2017-09-06	X	
64	분할측량	246	2017-04-07	2017-04-18	2017-04-19	X	
65	분할측량	242	2017-04-06	2017-04-19	2017-04-20	X	
66	분할측량	245	2017-04-07	2017-04-19	2017-04-20	X	
67	분할측량	251	2017-04-10	2017-04-20	2017-05-10	X	
68	분할측량	255	2017-04-11	2017-04-26	2017-10-17	X	
69	분할측량	252	2017-04-10	2017-04-27	-	X	
70	분할측량	248	2017-04-07	2017-04-27	-	X	
71	분할측량	289	2017-04-25	2017-04-27	2017-05-08	X	
72	분할측량	250	2017-04-10	2017-05-01	2017-05-08	X	
73	분할측량	263	2017-04-13	2017-05-08	2017-06-05	X	
74	분할측량	282	2017-04-24	2017-05-08	-	X	
75	분할측량	276	2017-04-20	2017-05-10	2017-05-10	X	
76	분할측량	264	2017-04-14	2017-05-11	-	X	
77	분할측량	271	2017-04-18	2017-05-11	2017-05-26	X	
78	분할측량	288	2017-04-25	2017-05-11	2017-05-16	X	
79	분할측량	270	2017-04-17	2017-05-17	2017-05-25	X	
80	분할측량	218	2017-03-28	2017-05-17	2017-05-23	X	
81	분할측량	292	2017-04-27	2017-05-18	-	X	
82	분할측량	196	2017-03-15	2017-05-19	2017-04-20	X	
83	분할측량	257	2017-04-11	2017-05-19	2017-06-08	X	
84	분할측량	188	2017-03-14	2017-05-19	2017-04-18	X	
85	분할측량	138	2017-02-21	2017-05-19	2017-03-08	X	
86	분할측량	151	2017-02-27	2017-05-19	2017-04-05	X	
87	분할측량	75	2017-01-31	2017-05-19	-	X	
88	분할측량	294	2017-04-28	2017-05-19	2017-05-31	X	
89	분할측량	217	2017-03-28	2017-05-19	2017-04-20	X	
90	분할측량	190	2017-03-14	2017-05-19	2017-06-27	X	
91	분할측량	159	2017-03-02	2017-05-19	2017-03-29	X	
92	분할측량	195	2017-03-15	2017-05-19	2017-04-20	X	
93	분할측량	224	2017-03-30	2017-05-19	2017-04-18	X	
94	분할측량	88	2017-02-03	2017-05-19	-	X	
95	분할측량	133	2017-02-20	2017-05-19	2017-03-23	X	
96	분할측량	192	2017-03-15	2017-05-19	2017-05-23	X	
97	분할측량	235	2017-04-03	2017-05-19	2017-07-18	X	
98	분할측량	187	2017-03-13	2017-05-19	2017-03-28	X	
99	분할측량	247	2017-04-07	2017-05-19	2017-04-18	X	
100	분할측량	243	2017-04-06	2017-05-19	2017-04-25	X	
101	분할측량	300	2017-05-02	2017-05-23	2017-05-31	X	
102	분할측량	306	2017-05-08	2017-05-23	2017-05-26	X	
103	분할측량	284	2017-04-24	2017-05-23	-	X	
104	분할측량	298	2017-05-02	2017-05-23	2017-05-31	X	
105	분할측량	293	2017-04-28	2017-05-24	-	X	
106	등록전환	19	2017-05-10	2017-05-25	2017-07-05	X	
107	분할측량	338	2017-05-22	2017-05-25	2017-07-05	X	
108	분할측량	307	2017-05-10	2017-05-26	-	X	
109	분할측량	335	2017-05-19	2017-05-29	2017-06-02	X	
110	분할측량	311	2017-05-11	2017-05-29	-	X	
111	분할측량	310	2017-05-11	2017-05-29	2017-06-02	X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공부정리완료일자	교부처리	비고
112	분할측량	334	2017-05-19	2017-05-30	2017-06-02	X	
113	분할측량	323	2017-05-17	2017-05-30	-	X	
114	분할측량	150	2017-02-27	2017-06-01	-	X	
115	분할측량	309	2017-05-11	2017-06-01	2017-06-13	X	
116	분할측량	318	2017-05-16	2017-06-02	2017-06-26	X	
117	분할측량	319	2017-05-16	2017-06-02	2017-06-26	X	
118	분할측량	336	2017-05-22	2017-06-07	-	X	
119	분할측량	352	2017-05-25	2017-06-07	-	X	
120	분할측량	341	2017-05-22	2017-06-07	2017-06-09	X	
121	분할측량	360	2017-05-30	2017-06-07	2017-06-19	X	
122	분할측량	359	2017-05-30	2017-06-07	2017-06-08	X	
123	분할측량	346	2017-05-24	2017-06-07	2017-06-19	X	
124	분할측량	348	2017-05-24	2017-06-08	2017-06-19	X	
125	분할측량	291	2017-04-26	2017-06-09	2017-06-02	X	
126	등록전환	23	2017-05-23	2017-06-09	2017-07-18	X	
127	분할측량	297	2017-05-01	2017-06-09	2017-05-25	X	
128	분할측량	337	2017-05-22	2017-06-09	-	X	
129	분할측량	369	2017-06-01	2017-06-09	2017-06-07	X	
130	분할측량	279	2017-04-20	2017-06-14	2017-07-10	X	
131	분할측량	358	2017-05-29	2017-06-14	2017-06-19	X	
132	분할측량	378	2017-06-02	2017-06-15	2017-07-03	X	
133	분할측량	350	2017-05-24	2017-06-15	-	X	
134	분할측량	371	2017-06-02	2017-06-16	-	X	
135	등록전환	25	2017-06-02	2017-06-16	-	X	
136	등록전환	1	2017-01-01	2017-06-16	-	X	
137	분할측량	370	2017-06-02	2017-06-16	-	X	
138	분할측량	389	2017-06-08	2017-06-19	2017-07-03	X	
139	분할측량	391	2017-06-09	2017-06-19	2017-06-28	X	
140	등록전환	24	2017-05-25	2017-06-21	2017-09-25	X	
141	분할측량	351	2017-05-25	2017-06-21	2017-09-25	X	
142	분할측량	405	2017-06-14	2017-06-23	2017-07-10	X	
143	분할측량	387	2017-06-07	2017-06-28	-	X	
144	분할측량	382	2017-06-07	2017-06-28	2017-07-05	X	
145	분할측량	417	2017-06-21	2017-06-28	2017-09-06	X	
146	분할측량	396	2017-06-09	2017-06-28	-	X	
147	분할측량	392	2017-06-09	2017-06-29	-	X	
148	분할측량	398	2017-06-13	2017-06-30	2017-07-12	X	
149	분할측량	367	2017-06-01	2017-07-05	-	X	
150	분할측량	410	2017-06-15	2017-07-06	2017-08-31	X	
151	분할측량	425	2017-06-27	2017-07-12	2017-07-12	X	
152	분할측량	427	2017-06-27	2017-07-18	2017-07-19	X	
153	분할측량	418	2017-06-22	2017-07-18	2017-07-31	X	
154	분할측량	431	2017-06-29	2017-07-18	-	X	
155	분할측량	368	2017-06-01	2017-07-19	2017-06-19	X	
156	분할측량	345	2017-05-23	2017-07-19	-	X	
157	분할측량	349	2017-05-24	2017-07-19	2017-06-09	X	
158	분할측량	404	2017-06-14	2017-07-19	2017-06-30	X	
159	분할측량	395	2017-06-09	2017-07-19	2017-07-04	X	
160	분할측량	394	2017-06-09	2017-07-19	2017-07-04	X	
161	분할측량	435	2017-06-29	2017-07-21	2017-08-14	X	
162	분할측량	447	2017-07-05	2017-07-21	-	X	
163	등록전환	34	2017-07-17	2017-07-24	-	X	
164	분할측량	461	2017-07-11	2017-07-24	2017-07-19	X	
165	분할측량	441	2017-07-03	2017-07-24	-	X	
166	분할측량	440	2017-07-03	2017-07-26	2017-09-13	X	
167	분할측량	437	2017-06-30	2017-07-26	-	X	
168	분할측량	460	2017-07-10	2017-07-26	2017-08-09	X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공부정리완료일자	교부처리	비고
169	분할측량	485	2017-07-19	2017-07-26	2017-09-29	X	
170	분할측량	443	2017-07-03	2017-07-26	2017-09-25	X	
171	분할측량	385	2017-06-07	2017-08-01	-	X	
172	분할측량	463	2017-07-11	2017-08-01	2017-08-02	X	
173	분할측량	452	2017-07-05	2017-08-01	2017-07-17	X	
174	분할측량	444	2017-07-04	2017-08-01	2017-08-10	X	
175	등록전환	33	2017-07-17	2017-08-01	-	X	
176	분할측량	482	2017-07-18	2017-08-01	2017-09-20	X	
177	분할측량	474	2017-07-14	2017-08-01	2017-07-26	X	
178	등록전환	35	2017-07-18	2017-08-01	2017-09-20	X	
179	분할측량	478	2017-07-17	2017-08-02	-	X	
180	분할측량	469	2017-07-13	2017-08-03	-	X	
181	분할측량	494	2017-07-21	2017-08-03	2017-08-31	X	
182	분할측량	467	2017-07-12	2017-08-03	2017-08-10	X	
183	분할측량	429	2017-06-28	2017-08-04	-	X	
184	분할측량	428	2017-06-28	2017-08-04	-	X	
185	분할측량	448	2017-07-05	2017-08-04	-	X	
186	분할측량	501	2017-07-24	2017-08-04	2017-08-10	X	
187	분할측량	507	2017-07-27	2017-08-04	2017-07-31	X	
188	분할측량	473	2017-07-14	2017-08-08	2017-08-11	X	
189	분할측량	450	2017-07-05	2017-08-08	2017-08-11	X	
190	분할측량	504	2017-07-26	2017-08-09	2017-08-09	X	
191	분할측량	449	2017-07-05	2017-08-10	-	X	
192	분할측량	508	2017-07-27	2017-08-11	2017-08-21	X	
193	분할측량	515	2017-07-28	2017-08-11	2017-08-25	X	
194	분할측량	540	2017-08-07	2017-08-11	2017-08-14	X	
195	분할측량	470	2017-07-13	2017-08-14	-	X	
196	분할측량	546	2017-08-08	2017-08-17	2017-08-24	X	
197	분할측량	523	2017-08-01	2017-08-22	2017-08-31	X	
198	분할측량	506	2017-07-27	2017-08-22	-	X	
199	분할측량	552	2017-08-09	2017-08-23	2017-08-31	X	
200	분할측량	528	2017-08-03	2017-08-24	-	X	
201	분할측량	62	2017-01-19	2017-08-29	-	X	
202	등록전환	6	2017-01-19	2017-08-29	-	X	
203	분할측량	535	2017-08-04	2017-08-29	-	X	
204	분할측량	544	2017-08-08	2017-08-29	2017-09-05	X	
205	분할측량	562	2017-08-14	2017-08-29	-	X	
206	분할측량	559	2017-08-14	2017-08-29	2017-09-06	X	
207	분할측량	549	2017-08-09	2017-08-29	-	X	
208	분할측량	547	2017-08-09	2017-08-29	2017-09-05	X	
209	분할측량	548	2017-08-09	2017-08-29	2017-08-30	X	
210	분할측량	558	2017-08-11	2017-08-31	-	X	
211	분할측량	553	2017-08-10	2017-08-31	-	X	
212	분할측량	557	2017-08-11	2017-08-31	-	X	
213	분할측량	554	2017-08-10	2017-08-31	2017-09-05	X	
214	분할측량	539	2017-08-07	2017-09-01	2017-10-11	X	
215	분할측량	510	2017-07-28	2017-09-01	2017-08-17	X	
216	분할측량	565	2017-08-16	2017-09-04	2017-09-11	X	
217	분할측량	433	2017-06-29	2017-09-05	2017-09-06	X	
218	분할측량	573	2017-08-17	2017-09-05	2017-09-06	X	
219	분할측량	581	2017-08-22	2017-09-05	2017-09-14	X	
220	분할측량	575	2017-08-18	2017-09-05	2017-09-11	X	
221	분할측량	550	2017-08-09	2017-09-06	2017-09-11	X	
222	분할측량	564	2017-08-14	2017-09-06	2017-09-11	X	
223	분할측량	556	2017-08-11	2017-09-06	2017-09-26	X	
224	분할측량	577	2017-08-21	2017-09-07	-	X	
225	등록전환	47	2017-08-24	2017-09-08	-	X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완료일자	공부정리완료일자	교부처리	비고
226	분할측량	610	2017-09-04	2017-09-08	-	X	
227	등록전환	50	2017-09-04	2017-09-08	-	X	
228	분할측량	596	2017-08-29	2017-09-13	-	X	
229	분할측량	595	2017-08-28	2017-09-13	-	X	
230	분할측량	586	2017-08-24	2017-09-13	2017-09-18	X	
231	분할측량	555	2017-08-11	2017-09-14	-	X	
232	등록전환	45	2017-08-22	2017-09-14	-	X	
233	등록전환	43	2017-08-11	2017-09-14	-	X	
234	분할측량	580	2017-08-22	2017-09-14	-	X	
235	분할측량	620	2017-09-06	2017-09-15	2017-09-20	X	
236	분할측량	589	2017-08-25	2017-09-15	-	X	
237	분할측량	563	2017-08-14	2017-09-15	-	X	
238	분할측량	606	2017-09-01	2017-09-15	2017-09-22	X	
239	분할측량	568	2017-08-17	2017-09-18	2017-09-13	X	
240	분할측량	593	2017-08-28	2017-09-18	2017-10-19	X	
241	분할측량	594	2017-08-28	2017-09-18	2017-09-27	X	
242	분할측량	609	2017-09-04	2017-09-19	2017-09-26	X	
243	분할측량	631	2017-09-08	2017-09-20	2017-09-28	X	
244	분할측량	619	2017-09-06	2017-09-22	2017-09-29	X	
245	분할측량	608	2017-09-04	2017-09-22	-	X	
246	분할측량	618	2017-09-06	2017-09-22	-	X	
247	분할측량	649	2017-09-19	2017-09-25	-	X	
248	분할측량	650	2017-09-20	2017-09-25	2017-10-11	X	
249	분할측량	592	2017-08-28	2017-09-25	2017-09-28	X	
250	분할측량	629	2017-09-08	2017-09-26	-	X	
251	분할측량	632	2017-09-08	2017-09-26	2017-10-10	X	
252	분할측량	572	2017-08-17	2017-09-27	-	X	
253	분할측량	645	2017-09-15	2017-09-28	-	X	
254	분할측량	643	2017-09-14	2017-09-28	-	X	
255	분할측량	644	2017-09-15	2017-09-28	-	X	
256	분할측량	652	2017-09-20	2017-09-28	2017-10-19	X	
257	분할측량	639	2017-09-12	2017-09-28	-	X	
258	분할측량	640	2017-09-13	2017-09-28	2017-09-29	X	
259	분할측량	647	2017-09-18	2017-09-28	2017-10-10	X	
260	분할측량	660	2017-09-22	2017-09-28	-	X	
261	분할측량	653	2017-09-21	2017-09-29	-	X	
262	등록전환	55	2017-09-25	2017-09-29	2017-10-10	X	
263	분할측량	648	2017-09-18	2017-09-29	2017-10-16	X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성과도 교부 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14 - 3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②항에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2012년 3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정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9조(지적측량 자료조사)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자가 세부측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측량 전 관련 측량결과도 및 지적공부상의 기재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측량연혁 및 성과결정에 사용한 기지점과 측량 대상토지 주위의 기지점 및 지적측량기준점 유·무 등을 조사하여 측량 시

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측량성과 결정에 사용한 자료는 현장지원시스템(MOS)상의 자료부와 측량결과도상 기록·관리하여 향후 인근 필지 업무 수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적측량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민원발생 방지를 하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또한 재조사사업 지구계가 세계측지계에 의하여 등록되어 지나 지역좌표계와 동시에 산출되므로 인근 지역의 측량시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써 그 성과물을 등록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사 □□□□□처에서는 지적재조사측량 성과물 등록 관리(□□□□□□□□-3616; 2015.12.08.)를 시달하여 등록 파일(GDB 3종: ①일필지측량파일 ②경계결정위원회 상정 파일 ③최종 결정 파일)을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에 등록하여 중장기 미래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본부 담당자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하여 성과물 파일 등록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달하였다.

따라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3종의 성과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상황을 상시 확인하여야 했다.

#### **[별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현황(2015년도 완료분)**

그런데도, [별표]와 같이 ○○시 ■■■■■지구를 제외한 26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구의 성과물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지적업무처리규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기

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에 대하여 3종의 성과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지구 성과물 등록 현황(2015년도 완료분)

순번	사업년도	지사	측량파일	등록파일	적정여부
1	2015	♡♡동부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2	2015	♡♡동부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3	2015	♡♡동부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경계결정위원회파일	부적정
4	2015	♡♡서부지사	Y	일필지 작업중 파일, 현장완료파일	부적정
5	2015	♡♡서부지사	Y	일필지 작업중 파일, 현장완료파일	부적정
6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7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8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9	2015	♣♣지사	Y	확정말박기, 확정, 베셀 파일	부적정
10	2015	♣♣지사	Y	확정말박기, 확정, 베셀 파일	부적정
11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12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 경계결정위원회상정, 최종결정파일	적정
13	2015	◀◀지사	Y	면적수정	부적정
14	2015	▶▶지사	Y	최종결정파일	부적정
15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16	2015	◆◆지사	Y	경계결정파일	부적정
17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18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19	2015	◁◁지사	Y	최종결정파일	부적정
20	2015	●●지사	N		부적정
21	2015	●●지사	N		부적정
22	2015	●●지사	Y	최종결정파일	부적정
23	2015	●●지사	Y	최종결정파일	부적정
24	2015	▣▣지사	N		부적정
25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26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부적정
27	2015	▣▣지사	Y	일필지측량파일, 경계결정위원회파일	부적정

일련번호	14 - 4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용 임차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제7조 (품위유지) 및 제8조(법규준수)에 “임직원은 평소의 말 또는 행동과 의사결정이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가치판단과 건전한 말과 행동으로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 시 각종 법령과 규정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 1. 업무용 임차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항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제10조(법규준수 및 금지사항)에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관리지침」 제25

조(사고처리 및 과실책임) 제3항에 “차량 운행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등은 운전자가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표 1] 인터넷 원격교육 교통안전관리 수강 현황(기간: 2013년~2017년 9월말 현재)

소속	직급	성명	수강년월
▷▷	국토정보직 3급	○○○	2017년 4월
▶▶	사원	○○○	2016년 9월

[표 2] 교통법규 4회 이상 위반자 현황(기간: 2013년~2017년 9월말 현재)

소속	직급	성명	위반횟수
♠♠	국토정보직 4급	○○○	6
☒☒	국토정보직 4급	○○○	6
♡♡동부	국토정보직 4급	○○○	5
◀◀	전문직	○○○	4
◁◁	국토정보직 4급	○○○	4

[표 3] 교통법규 위반자 재발방지 집합교육 대상자 현황

소속	사번	성명	비고
☒☒	910148	○○○	2014년위반
◆◆	870016	○○○	2014년위반
◆◆	920058	○○○	2014년위반
△△△△처	900153	○○○	2014년위반
♡♡동부	840015	○○○	2014년위반
☒☒	870136	○○○	2014년위반
♡♡서부	900161	○○○	2015년위반
▷▷	970045	○○○	2015년위반
▣▣▣▣	920118	○○○	2015년위반
◎◎	910145	○○○	교육희망자
◀◀	890135	○○○	교육희망자
◎◎	A20088	○○○	교육희망자

[표 4] 년도별 교통법규 위반 현황(○○지역본부)

구분	속도	신호·지시	주·정차	계	비고
2013년	42	1	11	54	erp등록기준
2014년	33	4	10	47	
2015년	17	1	8	26	
2016년	24	1	5	30	
2017년 9월말 현재	26	1	7	34	
계	142	8	41	191	

따라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관련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표 4] 현황과 같이 2013년 이후 2017년 9월 말 현재까지 속도위반 142회, 신호·지시, 주·정차 위반 49회 등 191회를 위반하였으며, [표 2] 현황과 같이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5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관련 교육과정인 인터넷 원격교육 교통안전관리 과정 수강 등 자체적인 노력이 미진하여 국민체감도 및 공사 인지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범칙금 납부에 따른 직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등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2. 업무용 임차차량을 통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공사에서는 업무용 차량 홍보스티커 배부(○○처-1407: 2017. 5.12.)를 통하여 공사 자산인 업무용 차량에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국민에게 우리 공사의 새 이름을 알리는 등 공사인지도와 국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무용 차량 홍보스티커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부착 방법은 사무실 주차, 출장 등 일반 업무 처리의 경우 반드시 부착하고, 긴요한 민원업무처리, 점심시간 외 식사 등 부득이한 경우 선임자(팀장)가 판단하여 탈·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부정청탁금지 홍보스티커 배부(○○실-5024: 2016.11.18.)를 통해 2016. 9.28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부정청탁금지 홍보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여 우리 공사의 청렴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 제고 및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사는 이러한 홍보스티커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공사인지도와 국민체감

도 향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사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홍보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안전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장려하였다.

[표 5] 홍보스티커 및 청렴스티커 부착 현황(본부 주차장 주차차량)

차량번호	홍보스티커 부착현황		청렴스티커 부착현황	비고
	측면	후면		
62하 xxxx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62하 xxxx	부착	미부착	부착	
62하 xxxx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62하 xxxx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69하 xxxx	미부착	미부착	부착	
62하 xxxx	미부착	미부착	미부착	

그런데도 [표 5] 현황과 같이 사무실 주차의 경우 반드시 부착하여야 할 홍보스티커 및 청렴스티커 부착을 소홀히 하여 공사인지도와 국민체감도 저하의 요인 및 청렴의식 제고,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 등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및 차량관리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관련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을 수강토록 유도하겠으며, 홍보스티커 및 청렴스티커 부착을 통해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업무용 임차차량 운영지침」 등 관련규정 및 지시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운행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 5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719,39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 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특근명령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급여규정」 제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수당의 종류 및 지급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4의2와 같으며, 별표 4의 ‘제수당 지급기준표’에 초과 근무한 직원(3급 이상 보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으며, 직급별 지급한도 시간수는 3급: 10시간, 4급: 14시간, 5급: 16시간, 6급~7급(갑, 을): 20시간, 기능직: 12시간, 보조직: 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과근무 산정기준」 7. 초과근무 산정시간 라에 “초과근무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초과 근무한 총시간에서 직급별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3급: 13, 4급: 13, 5급: 14, 6급: 17, 기능직: 15)을 공제한 후 「급여규정」에서 정한 제한시간 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단, 기본급에 편입된 시간공제에

대해서는 2007. 6. 1. 이전 입사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개인별 초과근무 신청에 따른 관리자의 승인 현황 및 출퇴근 근태기록 등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본부의 2016. 1. 1.~2017. 9. 30.까지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초과근무수당 착오 지급 현황’과 같이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등 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수 지급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토정보직 5급 \*\*\* 등 52명에 대해 2,719,3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즉시 회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2,719,390원은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직무교육을 통해 「급여규정」 및 「초과근무 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수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초과근무수당 착오 지급 현황(2016. 1. ~ 2017. 9.)

기관명: ○○지역본부

(금액단위: 원, 시간)

연번	해당 년월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명령 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 고	
							기준 시간	한도 시간	신청 시간	승인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회수)
													시간	금액	시간	금액		
1	'16. 4월	△△△△처	☞☞	5급	○○○	1997.10.15	30	20	18	18	2	4,322,630	16	496,370	14	434,330	62,040	
2	'16. 5월	○○○○ ○○처	☞☞	6급	○○○	2007.12.01	20	10	9	9	1	3,220,000	20	462,200	19	439,090	23,110	
3	'17. 5월	○○○○ ○○처	☞☞	5급	○○○	1997.08.08	30	20	20	17	3	4,355,120	16	500,100	14	437,590	62,510	승인누락 1시간50분
4	'17. 8월	○○○○ ○○처	☞☞	5급	○○○	1996.06.07	30	20	18	18	2	4,363,230	16	501,040	14	438,410	62,630	
5	'16. 2월	▲▲▲▲처	☞☞	4급	○○○	2002.04.15	27	17	17	16	1	4,149,000	14	416,880	13	387,100	29,780	미충족
6	'16. 3월	♡♡동부	☞☞	5급	○○○	1996.11.04	30	20	19	19	1	4,212,030	16	483,670	15	453,440	30,230	
7	'16. 1월	♠♠	☞☞	3급	○○○	1978.04.01	23	13	12	12	1	5,454,000	10	391,430	9	352,290	39,140	
8	'16.11월	◀◀	☞☞	5급	○○○	1997.04.21	30	20	19	19	1	4,403,830	16	505,700	15	474,090	31,610	
9	'17. 2월	◀◀	☞☞	4급	○○○	1991.07.16	30	20	19	19	1	4,766,170	14	478,890	13	444,690	34,200	
10	'16. 2월	▶▶	☞☞	5급	○○○	1997.02.03	30	20	18	18	2	4,202,630	16	482,590	14	422,270	60,320	
11	'16. 4월	▶▶	☞☞	4급	○○○	1991.03.20	27	17	16	16	1	4,629,000	14	465,110	13	431,890	33,220	
12	'16. 7월	▶▶	☞☞	7급	○○○	2014.06.16	20	10	10	9	1	2,378,000	20	341,330	19	324,270	17,060	미충족

연번	해당 년월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명령 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고	
							기준 시간	한도 시간	신청 시간	승인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회수)
													시간	금액	시간	금액		
13	'16. 8월	▶▶	☞☞	3급	○○○	1979.12.17	23	13	11	11	2	5,414,000	10	388,560	8	310,850	77,710	
14	'16. 8월	▶▶	☞☞	5급	○○○	1997.04.21	30	20	19	19	1	4,403,830	16	505,700	15	474,090	31,610	
15	'16. 8월	▶▶	☞☞	5급	○○○	1995.04.10	30	20	19	19	1	4,322,630	16	496,370	15	465,350	31,020	
16	'16. 9월	▶▶	☞☞	4급	○○○	1993.01.04	27	17	15	15	2	4,629,000	14	465,110	12	398,660	66,450	
17	'16. 9월	▶▶	☞☞	5급	○○○	1991.07.16	30	20	19	19	1	4,455,630	16	511,650	15	479,670	31,980	
18	'16.10월	▶▶	☞☞	4급	○○○	1991.01.21	27	17	15	15	2	4,559,000	14	458,080	12	392,640	65,440	
19	'16.10월	▶▶	☞☞	5급	○○○	1997.04.21	30	20	18	18	2	4,403,830	16	505,700	14	442,490	63,210	
20	'17. 3월	▶▶	☞☞	4급	○○○	1991.01.21	27	17	16	16	1	4,665,000	14	468,730	13	435,250	33,480	
21	'17. 3월	▶▶	☞☞	5급	○○○	1997.04.21	30	20	20	18	2	4,466,730	16	512,920	14	448,810	64,110	미충족
22	'17. 5월	▶▶	☞☞	5급	○○○	1997.04.21	30	20	19	19	1	4,466,730	16	512,920	15	480,860	32,060	미충족
23	'17. 5월	▶▶	☞☞	5급	○○○	1995.04.10	30	20	18	18	2	4,466,730	16	512,920	14	448,810	64,110	
24	'17. 6월	▶▶	☞☞	5급	○○○	1997.04.21	30	20	20	19	1	4,466,730	16	512,920	15	480,860	32,060	미충족
25	'16. 2월	◎◎	☞☞	6급	○○○	2009.06.01	20	10	9	9	1	3,020,000	20	433,490	19	411,810	21,680	
26	'16.10월	▷▷	☞☞	5급	○○○	1992.07.01	30	20	19	19	1	4,455,630	16	511,650	15	479,670	31,980	
27	'17. 4월	▷▷	☞☞	5급	○○○	1997.04.21	30	20	16	16	4	4,478,950	16	514,320	12	385,740	128,580	
28	'17. 4월	▷▷	☞☞	5급	○○○	2003.12.24	30	20	20	19	1	3,955,000	16	454,160	15	425,770	28,390	미충족

연번	해당 년월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명령 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고	
							기준 시간	한도 시간	신청 시간	승인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회수)
													시간	금액	시간	금액		
29	'17. 4월	▷▷	☞☞	6급	○○○	2006.03.21	37	27	26	26	1	3,347,000	20	480,430	19	456,400	24,030	
30	'17. 5월	▷▷	☞☞	5급	○○○	2003.12.24	30	20	20	19	1	3,955,000	16	454,160	15	425,770	28,390	미충족
31	'17. 6월	▷▷	☞☞	5급	○○○	1992.07.01	30	20	17	17	3	4,562,180	16	523,880	13	425,650	98,230	
32	'17. 7월	▷▷	☞☞	5급	○○○	1992.07.01	30	20	17	17	3	4,562,180	16	523,880	13	425,650	98,230	
33	'16. 3월	◁◁	☞☞	5급	○○○	1995.04.06	30	20	19	19	1	4,322,630	16	496,370	15	465,350	31,020	
34	'16. 3월	●●	☞☞	5급	○○○	1996.04.29	30	20	17	17	3	4,363,230	16	501,040	13	407,090	93,950	
35	'16. 3월	●●	☞☞	7급	○○○	2013.09.09	20	10	10	9	1	2,498,000	20	358,560	19	340,630	17,930	미충족
36	'16. 4월	●●	☞☞	4급	○○○	1989.08.01	27	17	16	16	1	4,894,280	14	491,760	13	456,640	35,120	
37	'16. 4월	●●	☞☞	7급	○○○	2013.09.09	20	10	9	9	1	2,498,000	20	358,560	19	340,630	17,930	
38	'16. 6월	●●	☞☞	5급	○○○	1995.04.06	30	20	20	19	1	4,415,030	16	506,980	15	475,300	31,680	미충족
39	'16. 6월	●●	☞☞	7급	○○○	2013.09.09	20	10	9	9	1	2,498,000	20	358,560	19	340,630	17,930	
40	'16. 9월	●●	☞☞	5급	○○○	1994.03.18	30	20	19	19	1	4,403,830	16	505,700	15	474,090	31,610	
41	'16. 6월	≡≡	☞☞	5급	○○○	1994.03.18	30	20	19	19	1	4,363,230	16	501,040	15	469,720	31,320	
42	'17. 5월	▣▣	☞☞	3급	○○○	1989.06.01	23	13	13	12	1	5,303,300	10	380,610	9	342,550	38,060	미충족

연번	해당 년월	당시 소속	사번	당시 직급	성명	입사일자	특근명령 내역					초과근무수당 지급 내역					비고	
							기준 시간	한도 시간	신청 시간	승인 시간	잔여 시간	당시 통상임금	기지급액		요지급액			차액 (회수)
													시간	금액	시간	금액		
43	'17. 7월	●●	㉞㉞	4급	○○○	1994.03.18	27	17	14	14	3	4,816,000	14	483,900	11	380,210	103,690	
44	'16. 8월	㉞㉞	㉞㉞	7급	○○○	2014.06.16	20	10	9	9	1	2,458,000	20	352,820	19	335,180	17,640	
45	'17. 1월	㉞㉞	㉞㉞	4급	○○○	1989.08.01	27	17	16	16	1	4,868,000	14	489,120	13	454,190	34,930	
46	'17. 3월	㉞㉞	㉞㉞	5급	○○○	1990.06.22	30	20	20	17	3	4,644,390	16	533,320	13	433,320	100,000	미충족
47	'17. 3월	㉞㉞	㉞㉞	7급	○○○	2014.06.16	20	10	10	9	1	2,533,000	20	363,580	19	345,400	18,180	미충족
48	'17. 5월	㉞㉞	㉞㉞	4급	○○○	1989.08.01	27	17	17	14	3	5,134,720	14	515,920	11	405,370	110,550	미충족
49	'17. 5월	㉞㉞	㉞㉞	5급	○○○	1990.06.22	30	20	20	17	3	4,644,390	16	533,320	13	433,320	100,000	미충족
50	'17. 5월	㉞㉞	㉞㉞	5급	○○○	1992.07.01	30	20	20	16	4	4,632,180	16	531,920	12	398,940	132,980	미충족
51	'17. 5월	㉞㉞	㉞㉞	5급	○○○	1997.07.18	30	20	20	15	5	4,507,330	16	517,580	11	355,840	161,740	미충족
52	'17. 5월	㉞㉞	㉞㉞	7급	○○○	2014.06.16	20	10	10	7	3	2,533,000	20	363,580	17	309,050	54,530	미충족
계																	2,719,39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총무관리 특근명령부 및 급여관리 월말수당 지급내역서 재구성

※ 본부 및 지사 건제순 및 월별로 작성

※ 초과근무수당 산정기초: 통상임금×1.5/209× 근무시간

일련번호	14 - 6	감사자	기획경영직 3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980,000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 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주민세(법인균등분) 과다 납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지방세법」 및 「회계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8. 1.자 과세기준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를 납부하고 있다.

주민세(법인균등분)는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법인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5호에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2009년 본사 ○○팀의 ‘법인균등할 주민세 관련

질의회신'(○○팀-3088, 2009. 9. 16.) 결과와 같이 「지방세법운용세칙」 176-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sup>1)</sup>에 근거하여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기관으로 법인 표준세율 구분이 ‘그 밖의 법인(구 기타법인)’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본부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을 “그 밖의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표준세액(50,000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세액 및 지방교육세(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 또는 25%)를 합산하여 납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본부 및 지사의 2016. 1. 1. ~ 2017. 9. 30.까지 세금과공과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별표] ‘주민세(법인균등분) 과다 납부 현황’과 같이 세무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본부 관내 ◀◀지사 등 9개 지사에서 주민세(법인균등분) 1,980,000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처에서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과다 납부한 주민세(법인균등분)에 대하여는 즉시 과세기관에 환급 신청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납부한 주민세(법인균등분) 1,980,000원은 즉시 과세기관에 환급 신청하여 각각 세금과공과(원금) 및 잡수입(이자상당액)으로

1) 「지방세법운용세칙」 176-1(행정자치부 세정 13430-104, 2001. 1. 29.)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한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분류한다.”고 질의회신 받음.

수입처리 하시기 바라며, 직무교육을 통해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주민세(법인균등분) 과다 납부 현황(2016~2017년)

기관명: ○○지역본부

(단위: 원)

연번	지사명	과세기관	납부일자	착오납부액	정당납부액	차액 (회수액)	비고
1	◀◀지사	◀◀시장	2016. 8. 31.	220,000	55,000	165,000	
2	◎◎지사	◎◎시장	2016. 8. 25.	220,000	55,000	165,000	
3	▣▣지사	▣▣군수	2016. 8. 30.	220,000	55,000	165,000	
4	▷▷지사	▷▷군수	2016. 8. 31.	220,000	55,000	165,000	
			2017. 8. 31.	220,000	55,000	165,000	
5	◁◁지사	◁◁군수	2016. 8. 31.	220,000	55,000	165,000	
6	●●지사	●●군수	2016. 8. 17.	220,000	55,000	165,000	
			2017. 8. 11.	220,000	55,000	165,000	
7	▤▤지사	▤▤군수	2016. 8. 19.	220,000	55,000	165,000	
8	▥▥지사	▥▥군수	2016. 8. 31.	220,000	55,000	165,000	
9	▧▧지사	▧▧군수	2016. 8. 18.	220,000	55,000	165,000	
			2017. 8. 21.	220,000	55,000	165,000	
계				2,640,000	660,000	1,980,000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회계관리 각개정원장 및 지출결의서 자료 재구성

※ 납부액: 주민세와 지방교육세(10%)

합산금액

일련번호	17 - 7	감사자	◆◆◆◆원 과장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구매규격 사전공개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처

내 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제1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은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제원·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용역계약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 실시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수요목적 범위 내에서 적극 수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본사 [ ]처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사전규격공개 강화) 알림 [ ]처-183, 2017.01.10.]을 통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고자 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위 본부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여 입찰 참여자의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표] 구매규격 사전공개 미실시 경쟁 입찰 현황 (2017. 1. 1. ~ 2017. 10. 27.)

공고번호	공고 명	입찰공고일자	계약부서
2017-069	○○지역본부 및 지사 사육관리용역	2017. 3. 9.	○○지역본부 ▲▲▲▲처
2017-071	2017년도 ○○지역본부 직원 건강검진	2017. 5. 17.	
2017-300	◎◎시 문화재 3D정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017. 9. 25.	

그러나, 위 본부에서는 2017년 총 3건의 용역을 경쟁 입찰을 통해 조달하며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입찰 참여자의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유도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부터는 경쟁 입찰 추진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로 입찰 참여자의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 8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471,11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〇〇지역본부 ▲▲▲▲처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시정 1개월 주의요구 20일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회수)·주의요구

제 목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〇〇지역본부 ▲▲▲▲처

내 용

〇〇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제3조(여비의 계산) 제1항에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전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0조(교육훈련 여비)에는 “공사나 외부 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임직원에게는 교육여비를 지급하며, 교육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정」의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규정」 제11조(교육훈련 여비)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차. 교육훈련비 2)에 “〇〇〇〇〇〇원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교육생에게 「복무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귀향 왕복여비와 식비 12,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운임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교육훈련으로 ○○○○○○원에 입교하는 경우(합숙의 경우) 일비는 등록일·입교일·수료일은 전액을 기타일은 지급 않아야 하며,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첨]의 여비교통비 착오 지급 현황과 같이 ‘국토정보리더과정 연수교육 교육훈련 등’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계산)에 따라 운임을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다 지급하였고, ○○○○○○원 입교(합숙)로 등록일·입교일·수료일 2일의 일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타일 일비를 지급하였으며,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이 아님에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여비규정」 및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지 않는 등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된 여비교통비 471,110원의 회수 조치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재차 감사 지적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지역본부 종합감사 결과통지(○○실-4207, 2016.9.30.): 출장여비 산정 및 지급 부적정(▶▶지사\_시정)

[관련자]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5급 ○○○

[별첨]

## 여비교통비 착오 지급 현황

(2016~2017년)

(금액단위 : 원)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기 지급액 (오)							요 지급액 (정)							차액	비고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소계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	지사	4급	○○○	국토정보리더과정 2016.01.25.~01.29 (○○○:♥♥♥)	87,6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140,9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10,600	○○○ 입교	
"	"	4급	○○○	신입팀장과정 2016.03.07.~03.11 (○○○:♥♥♥)	87,6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40,9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10,600	○○○ 입교
"	"	3급	○○○	국토정보정책과정 2016.03.14.~03.18 (○○○:♥♥♥)	87,6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40,9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10,600	○○○ 입교
"	"	7급	○○○	채용형인턴 평가 2016.04.24.~04.25 (○○○:♥♥♥)	87,600 (▶▶-♡♡-♥♥♥)	2	40,000	2	40,000	1	50,000	0	0	0	0	0	0	0	0	0	0	217,600	77,000 (▶▶-♠♠-♥♥♥)	2	40,000	2	40,000	1	50,000	0	0	0	0	0	207,000	10,600	○○○ 입교
"	"	보조직	○○○	채용형인턴 평가 2016.04.24.~04.25 (○○○:♥♥♥)	87,600 (▶▶-♡♡-♥♥♥)	2	40,000	2	40,000	1	50,000	0	0	0	0	0	0	0	0	0	0	217,600	77,000 (▶▶-♠♠-♥♥♥)	2	40,000	2	40,000	1	50,000	0	0	0	0	0	207,000	10,600	○○○ 입교
"	"	7급	○○○	신입사원 연수교육 2016.06.12.~06.17 (○○○:♥♥♥)	87,6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12,000	0	0	0	0	0	0	0	0	202,930	77,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0	0	0	180,330	22,600	○○○ 입교
"	"	보조직	○○○	신입사원 연수교육 2016.06.12.~06.17 (○○○:♥♥♥)	87,6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12,000	0	0	0	0	0	0	0	0	202,930	77,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0	0	0	180,330	22,600	○○○ 입교
"	"	7급	○○○	통계학과과정 2017.07.11.~07.15 (○○○:♥♥♥)	87,7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41,0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10,700	○○○ 입교
"	"	3급	○○○	고객대응전략과정 2016.08.17.~08.19 (○○○:♥♥♥)	87,8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41,1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10,800	○○○ 입교
"	"	4급	○○○	고객대응전략과정 2016.10.26.~10.28 (○○○:♥♥♥)	84,000 (▶▶-♡♡-♥♥♥)	3	6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57,3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27,000	○○○ 입교
"	"	7급	○○○	빅데이터전문가과정 2016.11.13.~11.18 (○○○:♥♥♥)	84,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12,000	0	0	0	0	0	0	0	0	199,330	77,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0	0	0	180,330	19,000	○○○ 입교
"	"	5급	○○○	GNSS측량실무과정 2016.11.20.~11.25 (○○○:♥♥♥)	84,000 (▶▶-♡♡-♥♥♥)	2	40,000	2	13,330	1	44,000	0	12,000	0	0	0	0	0	0	0	0	193,330	77,000 (▶▶-♠♠-♥♥♥)	2	40,000	2	13,330	1	44,000	0	0	0	0	0	174,330	19,000	○○○ 입교
"	"	보조직	○○○	현장실무강화과정 2016.11.27.~12.02 (○○○:♥♥♥)	84,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12,000	0	0	0	0	0	0	0	0	199,330	77,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0	0	0	180,330	19,000	○○○ 입교
"	"	5급	○○○	중견사원능력개발과정 2016.12.12.~12.16 (○○○:♥♥♥)	84,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0	0	0	0	0	137,3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0	0	0	130,330	7,000	○○○ 입교

소속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기 지급액 (오)										요 지급액 (정)										차액	비고
				유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소계	유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소계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 지사	7급	○○○	지적재조사기본과정 2017.04.24.~04.28 (○○○:♥♥)	84,000 (▶▶-♡♡-♥♥)	5	100,000	2	13,330	0	0	0	0	197,330	77,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0,330	67,000	○○○ 입교
"	3급	○○○	국토정보정책과정 2017.06.11.~06.16 (○○○:♥♥)	84,000 (▶▶-♡♡-♥♥)	2	40,000	2	13,330	1	60,000	0	12,000	209,330	77,000 (▶▶-♠♠-♥♥)	2	40,000	2	13,330	1	60,000	0	0	190,330	19,000	○○○ 입교
"	5급	○○○	중견사원과정 2017.07.16.~07.21 (○○○:♥♥)	84,000 (▶▶-♡♡-♥♥)	2	40,000	2	13,330	1	60,000	0	12,000	209,330	77,000 (▶▶-♠♠-♥♥)	2	40,000	2	13,330	1	60,000	0	0	190,330	19,000	○○○ 입교
"	5급	○○○	지적관련법령실무과정 2017.10.10.~10.13 (○○○:♥♥)	126,730 (▶▶-♡♡-♥♥)	2	40,000	2	13,330	1	44,000	0	0	224,060	77,000 (▶▶-♠♠-♥♥)	2	40,000	2	13,330	1	44,000	0	0	174,330	49,730	○○○ 입교
"	3급	○○○	2016. 관리자 워크숍 2016.03.20.~03.22 (문경STX리조트)	60,200 (▶▶-♡♡-점촌)	2	40,000	2	13,320	1	45,000	0	0	158,520	44,400 (▶▶-대구-점촌)	2	40,000	2	13,320	1	45,000	0	0	142,720	15,800	
"	3급	○○○	국정과제 설명회 참석 2017.09.21.~09.21 (본사: 전주)	48,400 (▶▶-♡♡-전주)	1	20,000	0	0	0	0	0	0	68,400	41,600 (▶▶-♠♠-전주)	1	20,000	0	0	0	0	0	0	61,600	6,800	
"	7급	○○○	무인비행장치 실무교육 2017.08.03.~08.04 (본부: ♥♥)	116,680 (▶▶-♡♡)	2	40,000	0	0	0	0	0	0	156,680	33,600 (▶▶-♡♡)	2	40,000	0	0	0	0	0	0	73,600	83,080	
	소계	21 건		1,812,710		900,000		306,600		553,000		84,000	3,656,310	1,505,600		820,000		306,600		553,000		0	3,185,200	471,110	

일련번호	14 - 9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282,4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제3조(여비의 계산) 제1항에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전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되어 있다.

따라서 운임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첨]의 교육훈련 여비 착오 지급 현황과 같이 ‘국토정보리더과정

연수교육 교육훈련 등'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계산)에 따라 운임을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등 교육훈련 여비지급 업무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된 여비교통비 282,4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여비교통비 착오 지급 현황

(2016~2017년)

(금액단위 : 원)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기 지급액 (오)							요 지급액 (정)							차액	비고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소계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4급	○○○	국토정보리더과정 연수교육	2016.01.18.~01.22 (○○○:♥♥)	<u>88,400</u> (♠♠-♡♡-♥♥)	2	40,000	2	13,330	0	0	<u>141,730</u>	<u>55,000</u> (♠♠-♥♥)	2	40,000	2	13,330	0	0	<u>108,330</u>	33,400	○○○ 입교
5급	○○○	지적재조사 기본과정 연수교육	2016.06.26.~06.30 (○○○:♥♥)	<u>99,800</u> (♠♠-♡♡-♥♥)	2	40,000	2	13,330	0	0	<u>153,130</u>	<u>55,000</u> (♠♠-♥♥)	2	40,000	2	13,330	0	0	<u>108,330</u>	44,800	○○○ 입교
4급	○○○	지적재조사 실무과정 연수교육	2016.08.01.~08.05 (○○○:♥♥)	<u>91,600</u> (<<-♡♡-♥♥)	2	40,000	2	13,330	0	0	<u>144,930</u>	<u>66,000</u> (<<-♠♠-♥♥)	2	40,000	2	13,330	0	0	<u>119,330</u>	25,600	○○○ 입교
3급	○○○	지적측량결과도 품질관리 담당교육	2016.11.11.~11.11 (○○○:♥♥)	<u>95,800</u> (●●-♡♡-♥♥)	1	20,000	0	0	0	0	<u>115,800</u>	<u>70,200</u> (●●-♠♠-♥♥)	1	20,000	0	0	0	0	<u>90,200</u>	25,600	○○○ 입교
전문직	○○○	미래설계과정 위탁교육 참석	2017.06.26.~06.30 (♀♀)	<u>121,600</u> (●●-♡♡-♀♀)	2	40,000	2	13,320	0	0	<u>174,920</u>	<u>64,800</u> (●●-♀♀)	2	40,000	2	13,320	0	0	<u>118,120</u>	56,800	근무지외
7급	○○○	스마트국토엑스포 참석	2016.08.30.~09.01 (♀♀)	<u>104,200</u> (♡♡-♀♀)	3	60,000	3	60,000	2	100,000	<u>324,200</u>	<u>64,800</u> (●●-♀♀)	3	60,000	3	60,000	2	100,000	<u>284,800</u>	39,400	근무지외
7급	○○○	스마트국토엑스포 참석	2017.09.01.~09.01 (♀♀)	<u>121,600</u> (●●-♡♡-♀♀)	1	20,000	0	0	0	0	<u>141,600</u>	<u>64,800</u> (●●-♀♀)	1	20,000	0	0	0	0	<u>84,800</u>	56,800	근무지외
<b>소계</b>	<b>7 건</b>			<b>723,000</b>		260,000		113,310		100,000	<b>1,196,310</b>	<b>440,600</b>		260,000		113,310		100,000	<b>913,910</b>	<b>282,400</b>	

일련번호	14 - 10	감사자	국토정보직 3급 〇〇〇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〇〇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교부 서비스 소홀

관 계 기 관 〇〇지역본부 ◎◎지사

내 용

〇〇지역본부 ◎◎지사에서는 대국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측량성과도 현장 교부제도 및 성과도 배달 등 효율적인 지적측량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9조(측량성과도의 발급 등) ②항에 “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발급한 측량 성과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전단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측량성과도를 송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본사 ▽▽▽▽실에서는 고객서비스 향상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범운영<sup>3)</sup> 및 시행<sup>4)</sup>을 통지하였다. 그 배경 및

3)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범운영 알림(▽▽▽▽실-5479: 2016.12.13.)

4)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행 알림(▽▽▽▽실-5773: 2016.12.30.)

목적을 살펴보면 결과부 교부시간 단축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과 소통 강화, 우편송부에 따른 수작업의 전산화로 작업시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의 목적이 있고 또한, 이메일 교부 서비스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유도하여 공사 인지도 및 국민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극적인 실행을 시달하였다.

따라서 접수 및 고객접점 담당자는 일반업무 경계복원 및 지적현황측량 의뢰 고객에게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당해 지사는 이메일 교부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표] 2017년 성과도 송부 집계 현황(일반업무)**

기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0월 18일

(단위: 건)

측량종목	지사수령	우편	배달	대행	이메일	접수창구수령	현장교부	비고
일)경계복원	50	233	0	33	2	10	781	
일)지적현황	562	59	4	11	5	12	1	
계	612	292	4	44	7	22	782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자료 가공

그런데도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위 [표]에서와 같이 이메일 교부 시범운영 및 시행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실적이 7건에 불과하는 등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행」과 관련 지시사항을 숙지하여 접수 및 고객접점 담당자는 의뢰고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 관련 이메일 교부 서비스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시행」등 관련 지시사항을 숙지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결과부 이메일 교부 서비스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4 - 11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시정 1개월 주의요구 20일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회수)·주의요구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한 고객에게 수수료 전액을 수입하고 업무가 완료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교부하고 있다.

「업무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특수업무의 계약체결 시 수수료를 전액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5)의 어느 하나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지적확정측량 업무에 한하여 고객(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물(토지, 건물에 한함)로 수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물의 가격은 감정가에 의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었을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상장법인 4. 그 밖에 해당 업무의 총 금액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의 용자대상 결정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경우에는 미수수료 수입 후 성과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미수수료 전액을 수입 후 성과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표]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 수입 전 성과도 교부 현황(기준일: 2017. 10. 19.현재)

업무구분	접수종목	총계정 번호	접수 번호	의뢰인	미수수료 (부가세포함)	수수료청구일자	성과도교부일자	비고
특수업무	연속지측량	4	1	(주)L.L.코리아	2,121,900	2015-12-21	2015-12-21	
특수업무	기초(삼각)	4	2	(주)L.L.코리아	1,435,500	2015-12-21	2015-12-21	
특수업무	연속지측량	4	2	(주)L.L.코리아	9,412,700	2015-12-21	2015-12-21	
특수업무	기초점매설	4	4	(주)L.L.코리아	369,600	2015-12-21	2015-12-21	
특수업무	기초(도근)	4	4	(주)L.L.코리아	1,447,600	2015-12-21	2015-12-21	
특수업무	확정(구획정리)	4	4	(주)L.L.코리아	43,078,100	2015-12-21	2015-12-21	
계			6건		57,865,400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업무처리 결과 미수수료가 발생되면 「업무규정」 제10조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미수수료 전액을 수입 후 성과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미수수료 6건 57,865,400원을 수입 조치 하지 않고 성과를 고객에게 교부하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를 부적정하게 교부하였다.

그 결과 「업무규정」 제10조 제2항 및 5항을 준용하지 않아 미수수료 6건 57,865,400원을 고객에게 수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규정」을 면밀히 숙지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① 「업무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57,865,400원을 수입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지적측량수수료 수입 전 업무처리 및 성과도 교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5조 제2항 9호에 따라 “주의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지역본부 <<지사 국토정보직 ○급 ○○○

일련번호	14 - 12	감사자	국토정보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등록전환 업무처리에 따른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다.

「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sup>6)</sup> 2(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기준, 측량준비 파일)에 “등록전환, 임야분할 및 임야경계 측량 시 측량대상 토지와 임야를 광범위하게 접합하여 접합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와 임야를 접합한 부분에 대하여는 측량결과도 뒷면에 임야 이동량을 기재한 접합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야 이동량을 측량파일에 기재하여 후속 측량 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5(지적측량결과도 작성)에 “등록전환측량결과도, 임야분할측량결과도 및 임야경계측량결과도 뒷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접합한 토지·임야 접합도 전체 부분을 작성한 후 임야 이동량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6) 등록전환측량업무 처리 지침 통보(◇◇◇◇실-2011 : 2012. 5. 9.)

따라서 등록전환측량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적도와 임야도를 접합한 토지·임야 접합도 전체 부분을 작성한 후 임야 이동량을 기재하고 측량결과도와 함께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이하 “MOS시스템”이라 한다)에 자료를 등록하여 후속 측량 시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별표] 2017년 등록전환 측량업무 토지·임야 접합도 미 작성 현황과 같이 등록전환측량 업무를 완료한 80건에 대하여 측량결과도 출력물의 뒷면에는 지적도와 임야도를 접합한 토지·임야 접합도 전체 부분을 작성한 후 임야 이동량을 출력하여 성과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MOS시스템에 토지·임야 접합도」를 등록하여 관리 하지 않아 후속 측량 시 임야 이동량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기 어렵게 하는 등 등록전환측량 업무에 따른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겠으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숙지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등록전환측량 업무처리 지침」에 대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전환측량에 따른 토지·임야 접합도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017년 등록전환 측량업무 토지·임야 접합도 미 작성 현황(2017. 10. 19.현재)

구분	측량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측량일자	검사요청일	측량팀장	접합도등록 여부(MOS)
1	등록전환	1	2017-01-01	2017-03-28	2017-03-29	○○○	×
2	등록전환	3	2017-01-01	2016-12-29	2016-12-30	○○○	×
3	등록전환	4	2017-01-01	2016-12-29	2016-12-30	○○○	×
4	등록전환	5	2017-01-01	2017-01-03	2017-01-04	○○○	×
5	등록전환	6	2017-01-01	2017-01-05	2017-01-06	○○○	×
6	등록전환	7	2017-01-04	2017-02-10	2017-02-14	○○○	×
7	등록전환	9	2017-01-10	2017-01-23	2017-01-24	○○○	×
8	등록전환	10	2017-01-18	2017-02-02	2017-02-03	○○○	×
9	등록전환	11	2017-02-10	2017-02-24	2017-02-27	○○○	×
10	등록전환	14	2017-02-28	2017-03-28	2017-03-29	○○○	×
11	등록전환	15	2017-03-02	2017-03-30	2017-03-31	○○○	×
12	등록전환	16	2017-03-15	2017-03-06	2017-03-16	○○○	×
13	등록전환	17	2017-03-28	2017-03-30	2017-03-31	○○○	×
14	등록전환	18	2017-04-03	2017-04-19	2017-04-20	○○○	×
15	등록전환	19	2017-04-04	2017-04-24	2017-04-25	○○○	×
16	등록전환	22	2017-04-17	2017-05-08	2017-05-10	○○○	×
17	등록전환	24	2017-04-24	2017-05-17	2017-05-18	○○○	×
18	등록전환	25	2017-04-26	2017-05-08	2017-05-18	○○○	×
19	등록전환	26	2017-04-26	2017-05-18	2017-05-19	○○○	×
20	등록전환	27	2017-04-26	2017-05-12	2017-05-15	○○○	×
21	등록전환	28	2017-04-27	2017-05-19	2017-05-22	○○○	×
22	등록전환	29	2017-04-27	2017-05-18	2017-05-19	○○○	×
23	등록전환	31	2017-05-02	2017-05-13	2017-05-15	○○○	×
24	등록전환	32	2017-05-04	2017-05-22	2017-05-23	○○○	×
25	등록전환	34	2017-05-10	2017-05-24	2017-05-25	○○○	×
26	등록전환	35	2017-05-11	2017-05-24	2017-05-25	○○○	×
27	등록전환	36	2017-05-11	2017-05-25	2017-05-26	○○○	×
28	등록전환	37	2017-05-16	2017-05-26	2017-05-29	○○○	×
29	등록전환	38	2017-05-26	2017-06-12	2017-06-13	○○○	×
30	등록전환	39	2017-05-29	2017-06-12	2017-06-13	○○○	×
31	등록전환	40	2017-05-30	2017-06-14	2017-06-15	○○○	×
32	등록전환	41	2017-06-07	2017-06-14	2017-06-15	○○○	×
33	등록전환	42	2017-06-07	2017-06-21	2017-06-22	○○○	×
34	등록전환	43	2017-06-08	2017-06-22	2017-06-23	○○○	×
35	등록전환	44	2017-06-09	2017-06-22	2017-06-23	○○○	×
36	등록전환	45	2017-06-09	2017-06-19	2017-06-20	○○○	×
37	등록전환	46	2017-06-09	2017-06-26	2017-06-27	○○○	×
38	등록전환	47	2017-06-12	2017-06-26	2017-06-27	○○○	×
39	등록전환	48	2017-06-12	2017-07-11	2017-07-12	○○○	×
40	등록전환	49	2017-06-12	2017-06-27	2017-06-28	○○○	×
41	등록전환	50	2017-06-13	2017-06-28	2017-06-29	○○○	×
42	등록전환	51	2017-06-13	2017-06-27	2017-06-28	○○○	×
43	등록전환	52	2017-06-14	2017-06-29	2017-06-30	○○○	×
44	등록전환	53	2017-06-14	2017-06-29	2017-06-30	○○○	×
45	등록전환	55	2017-06-22	2017-07-07	2017-07-10	○○○	×
46	등록전환	56	2017-06-26	2017-07-19	2017-07-20	○○○	×
47	등록전환	57	2017-06-27	2017-07-24	2017-07-18	○○○	×
48	등록전환	58	2017-06-29	2017-07-13	2017-07-14	○○○	×
49	등록전환	60	2017-07-05	2017-07-18		○○○	×
50	등록전환	61	2017-07-07	2017-07-12	2017-07-20	○○○	×
51	등록전환	62	2017-07-07	2017-07-12	2017-07-20	○○○	×
52	등록전환	63	2017-07-07	2017-07-19	2017-07-20	○○○	×
53	등록전환	64	2017-07-10	2017-07-12	2017-07-13	○○○	×
54	등록전환	65	2017-07-11	2017-07-17	2017-07-18	○○○	×

구분	측량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측량일자	검사요청일	측량팀장	접합도등록 여부(MOS)
55	등록전환	66	2017-07-11	2017-07-17	2017-07-18	○○○	×
56	등록전환	67	2017-07-13	2017-07-20	2017-07-28	○○○	×
57	등록전환	68	2017-07-14	2017-08-25	2017-08-28	○○○	×
58	등록전환	69	2017-07-17	2017-07-25	2017-07-26	○○○	×
59	등록전환	71	2017-07-25	2017-08-01	2017-08-02	○○○	×
60	등록전환	72	2017-07-27	2017-08-17	2017-08-18	○○○	×
61	등록전환	75	2017-08-01	2017-08-01	2017-08-03	○○○	×
62	등록전환	76	2017-08-07	2017-08-09	2017-08-10	○○○	×
63	등록전환	77	2017-08-08	2017-08-11	2017-08-14	○○○	×
64	등록전환	78	2017-08-08	2017-08-11	2017-08-14	○○○	×
65	등록전환	79	2017-08-09	2017-08-16	2017-08-17	○○○	×
66	등록전환	80	2017-08-10	2017-08-17	2017-08-18	○○○	×
67	등록전환	82	2017-08-10	2017-08-16	2017-08-17	○○○	×
68	등록전환	83	2017-08-14	2017-08-17	2017-08-18	○○○	×
69	등록전환	84	2017-08-17	2017-08-23	2017-08-24	○○○	×
70	등록전환	85	2017-08-18	2017-08-28	2017-08-29	○○○	×
71	등록전환	88	2017-09-06	2017-09-08	2017-09-11	○○○	×
72	등록전환	91	2017-09-11	2017-09-21	2017-09-22	○○○	×
73	등록전환	92	2017-09-11	2017-09-20	2017-09-21	○○○	×
74	등록전환	93	2017-09-11	2017-09-20	2017-09-21	○○○	×
75	등록전환	95	2017-09-11	2017-10-12	2017-10-13	○○○	×
76	등록전환	96	2017-09-12	2017-09-21	2017-09-22	○○○	×
77	등록전환	98	2017-09-19	2017-10-12	2017-10-13	○○○	×
78	등록전환	99	2017-09-19	2017-09-25	2017-09-26	○○○	×
79	등록전환	102	2017-09-25	2017-10-10	2017-10-11	○○○	×
80	등록전환	106	2017-10-13	2017-10-18	2017-10-19	○○○	×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및 지적측량현장지원시스템(MOS) 자료 재구성

일련번호	14 - 13	감사자	기획경영직 4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352,400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시정요구(회수)

제 목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여비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여비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및 제3조(여비의 계산) 제1항에 “여비는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전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되어 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차. 교육훈련비 2)에 “○○○○○○원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교육생에게 「복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귀향 왕복여비와 식비 12,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운임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첨]의 여비교통비 착오 지급 현황과 같이 ‘국토정보리더과정 연수 교육 교육훈련 등’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계산)에 따라 운임을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을 하지 않고 우회하는 경로 및 방법으로 계산하여 과다 지급하였으며, 귀향 일식비는 연수교육과정이 2주 이상인 아님에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여비규정」 및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지 않는 등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처리에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과다 지급된 여비교통비 352,4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교통비 지급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여비교통비 착오 지급 현황

(2016~2017년)

(금액단위 : 원)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기 지급액 (오)								요 지급액 (정)								차액	비고				
			윤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소계	윤임	일비		식비		숙박비			귀향 일식비		소계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일수		금액
4급	○○○	국토정보리더과정 2016.01.18.~01.22 (○○○:♥♥)	86,800 (♠♠-♡♡-♥♥)	2	40,000	2	13,330	1	40,000	0	0	180,130	66,000 (◁▷-♠♠-♥♥)	2	40,000	2	13,330	1	40,000	0	0	159,330	20,800	○○○ 입교
5급	○○○	고객감동이유만들기 2016.05.02.~05.04 (○○○:♥♥)	78,4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1,7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12,400	○○○ 입교
5급	○○○	엑셀통계과정 2016.08.22.~08.26 (○○○:♥♥)	78,4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1,7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12,400	○○○ 입교
5급	○○○	국토공간 Simulation과정 2016.09.19.~09.23 (○○○:♥♥)	73,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26,3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7,000	○○○ 입교
5급	○○○	중견사원능력개발 2016.11.28.~12.02 (○○○:♥♥)	73,600 (♡♡-♥♥)	2	40,000	2	13,330	0	0	0	0	126,9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7,600	○○○ 입교
4급	○○○	국토정보입문 2016.12.19.~12.23 (○○○:♥♥)	88,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41,330	55,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08,330	33,000	○○○ 입교
보조 인력	○○○	두드림과정 2017.04.03.~04.07 (○○○:♥♥)	83,4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6,7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17,400	○○○ 입교
4급	○○○	커뮤니케이션 향상과정 2017.06.07.~06.09 (○○○:♥♥)	86,6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9,9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20,600	○○○ 입교
2급	○○○	국토정보정책과정 2017.06.25.~06.30 (○○○:♥♥)	73,600 (♡♡-♥♥)	2	40,000	2	13,330	0	0	0	12,000	138,930	66,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19,330	19,600	○○○ 입교
4급	○○○	팀장과정 2017.07.24.~07.28 (○○○:♥♥)	82,6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5,930	55,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08,330	27,600	○○○ 입교
4급	○○○	지적재조사 기본과정 2017.08.21.~08.25 (○○○:♥♥)	82,600 (♠♠-♡♡-♥♥)	2	40,000	2	13,330	0	0	0	0	135,930	55,000 (♠♠-♥♥)	2	40,000	2	13,330	0	0	0	0	108,330	27,600	○○○ 입교
5급	○○○	지적관계법령 실무과정 2017.10.11.~10.13 (○○○:♥♥)	73,5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176,830	66,000 (◁▷-♠♠-♥♥)	2	40,000	2	13,330	1	50,000	0	0	169,330	7,500	○○○ 입교
6급	○○○	국토교통부장관기 야구대회 참석 2016.07.15.~07.16 (인천)	120,400 (♡♡-인천)	2	40,000	2	40,000	1	50,000	0	0	250,400	57,000 (◁▷-♠♠-인천)	2	40,000	2	40,000	1	50,000	0	0	187,000	63,400	
6급	○○○	스마트국토 엑스포 2016.08.31.~09.01 (송송)	97,400 (♡♡-송송)	2	40,000	2	40,000	1	50,000	0	0	227,400	74,300 (◁▷-♠♠-송송)	2	40,000	2	40,000	1	50,000	0	0	204,300	23,100	
7급	○○○	스마트국토 엑스포 2016.08.31.~09.01 (송송)	106,000 (♡♡-송송)	2	40,000	2	40,000	1	50,000	0	0	236,000	57,000 (◁▷-♠♠-송송)	2	40,000	2	40,000	1	50,000	0	0	187,000	49,000	
5급	○○○	스마트국토 엑스포 2017.08.30.~08.31 (송송)	60,400 (♡♡-송송)	2	40,000	2	40,000	0	0	0	0	140,400	57,000 (◁▷-♠♠-송송)	2	40,000	2	40,000	0	0	0	0	137,000	3,400	
소계	16 건		1,344,700		640,000		319,960		240,000		12,000	2,556,660	1,004,300		640,000		319,960		240,000		0	2,204,260	352,400	

일련번호	14- 14	감사자	국토정보직직 5급 000	공 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지역본부 ♣♣지사	처분요구일자	2017. 11.	회신기일
				1개월

##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 통 보

제 목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 소홀

관 계 기 관 ○○지역본부 ♣♣지사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측량성과 심의제도의 일환인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업무처리지침」 제19조(구성) 제1항에 의하면 “지적측량성과협의회는 지사장이 겸임하는 의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팀장은 모두 의원으로 참여한다.(다만 지사의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인 경우 전 직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20조(개최)에는 “지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 차이의 적정 여부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지사장이나 관련 측량자는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38조(등록 대상 업무)에서는 “시스템의 등록대상 업무는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로써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의 「민원관리」 유형에 따라 등록하고, 지적측량성과협의회, 지적측량실사위원회, 적부심사, 소송, 보상 등은 「기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지 출장 후 지적측량성과 결정시 성과를 결정하지 못하여 업무를 취소할 경우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의결에 따라 업무를 취소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성과협의회 미개최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미등록 현황

(기간: '16. 1. 1. ~ '17. 9. 30.)

구분	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최소사유	성과협의회	CRM등록
일반	경계복원	4	2016-01-01	성과제시불능	개최	등록
일반	지적현황	46	2016-05-03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584	2016-07-06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662	2016-08-09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680	2016-08-22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354	2016-07-26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596	2016-07-12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487	2016-11-15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지적현황	1	2017-01-01	성과제시불능	개최	등록
일반	경계복원	3	2017-01-01	성과제시불능	개최	등록
일반	경계복원	18	2017-01-02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44	2017-01-11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61	2017-02-07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경계복원	196	2017-03-08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212	2017-04-13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1	2017-01-01	측량수행불능	미개최	미등록
일반	분할측량	305	2017-05-25	성과제시불능	미개최	미등록

그런데도 위 지사는 [표] ‘지적측량성과협의회 미개최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 (CRM) 미등록 현황’과 같이 2016. 1. 1.부터 2017. 9. 30.일까지 성과제시불능에 따른 업무를 취소하면서 14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에 등록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측량성과 차이에 따른 성과협의회 미개최로 인하여 사후 측량민원 발생에 대한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감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앞으로 민원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개최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운영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지적측량성과협의회 개최 및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업무처리지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1] 현 지 조 치 ( 처 분 ) 서

□ 제 목: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민원업무처리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등록·관리하는 고객관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 제41조(시스템 모니터링) 제1항에 따르면 “본사는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사의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준수일, 완료유형, 미결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민원관리부문(VOC) 사용자지침서\_3.민원관리\_3.3처리\_민원 조치내역에서 완료구분 선택을 확인측량, 확인설명, 취하, 소송, 적부심사, 반복민원, 내부종결, 중복민원, 서면회신, 기타, 바로처리 이첩의 11개의 완료구분 중에서 민원조치결과에 맞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 2017년 민원업무처리 등록 착오 현황(2017.10.25.현재)

민원번호	접수일자	기관	대상토지	완료구분 등록현황		비고
				오	정	
2017-000697	2017-08-29	○○지사	▲▲	확인측량	확인설명	
2017-000583	2017-07-25	○○지사	▲▲	확인측량	확인설명	
2017-000314	2017-05-11	○○지사	▲▲	확인측량	확인설명	
계			3건			

※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민원처리 등록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업무처리 완료구분을 확인한 결과 확인설명을 확인측량으로 착오 등록되어 있어 2017년 직원 근무성적평정 시에 민원업무처리 가·감점 부여에 착오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민원업무처리에 따른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민원관리에서 완료구분을 착오 등록한 3건에 대하여 수정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계관리시스템 운영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27.

2017. 10. 23. 부터 2017. 10. 27.까지 ○○지역본부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2] 현 지 조 치 ( 처 분 ) 서

□ 제 목: 근태관리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는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을 위해 연 1회 개인별 가족 사랑의 날 사용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고 있다.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알림”<sup>7)</sup>에 따르면 “연 1회 개인별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근태관리는 일일출장 조치하되 여비 없는 출장 처리와 , 출장처리 시 출장구분은 일반 활동, 근태구분은 기타로 출장목적은 가족 사랑의 날 행사 참석으로 하고, 각 기관별 가족 사랑의 날 행사 참여 개인별 사용 현황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규칙」 제5조(평정)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이하 “평정기간”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1년간)로 하며 평정기간 만료 후 20일 이내에 평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지사업무추진 실적표, [별지 제4호서식]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가족 사랑의 날 근태처리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자체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시달<sup>8)</sup>하였다.

따라서 가족 사랑의 날 사용에 따른 근태처리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하여 근무성정평정 시에 지사별 업무추진 실적표 및 개인별 실적 및 근태 상황에 영향

7)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알림(☐☐☐☐☐☐실-5924: 2014. 8. 4.)

8) 가족 사랑의 날 근태처리(5. 2 / 5. 4.)이상 유무 자체 점검 협조 요청(☐☐☐☐☐☐실 업무연락: 2017. 5. 16.)

을 미치지 않도록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표] 2017년 '가족 사랑의 날' 근태구분 처리 착오 현황(2017. 1. 1.~2017. 10.24.현재)

번호	소속	대상자		가족 사랑의 날 사용일자	근태구분 관리 현황		정정
		직급	성명		정	오	
1	♣♣	5급	○○○	2017-02-08	기타	일반출장	기타
2	▶▶	담당관	○○○	2017-03-13	기타	일반출장	기타
3	▲▲▲▲처	7급(을)	○○○	2017-03-13	기타	일반출장	기타
4	▶▶	4급	○○○	2017-03-17	기타	일반출장	기타
5	▶▶	4급	○○○	2017-03-23	기타	일반출장	기타
6	▶▶	5급	○○○	2017-03-23	기타	일반출장	기타
7	▶▶	보조인력	○○○	2017-03-23	기타	일반출장	기타
8	♠♠♠♠♠♠처	6급	○○○	2017-04-17	기타	일반출장	기타
9	♠♠♠♠♠♠처	6급	○○○	2017-04-17	기타	일반출장	기타
10	▲▲▲▲처	2등급	○○○	2017-05-04	기타	일반출장	기타
11	♠♠♠♠♠♠처	5급	○○○	2017-08-14	기타	일반출장	기타
12	♠♠♠♠♠♠처	5급	○○○	2017-08-14	기타	일반출장	기타
13	♠♠♠♠♠♠처	5급	○○○	2017-08-14	기타	일반출장	기타
14	♠♠♠♠♠♠처	6급	○○○	2017-08-14	기타	일반출장	기타
15	●●	2급	○○○	2017-08-25	기타	일반출장	기타
16	◎◎	5급	○○○	2017-09-01	기타	일반출장	기타
17	♠♠	보조인력	○○○	2017-09-18	기타	일반출장	기타

※ ERP 출장내역 및 근무상황카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본부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7. 1. 1.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개인별 연 1회 '가족 사랑의 날' 사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근태관리 출장처리 시 출장구분은 일반 활동으로 근태구분은 기타로 등록하지 않고 일반출장으로 근태구분을 착오 등록하여 근무성정평정 시에 지사별 업무추진 실적표 및 개인별 실적 및 근태상황 실적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가족 사랑의 날 근태구분 착오 등록으로 근태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장은 가족 사랑의 날 근태구분이 착오로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정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사랑의 날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27.

2017. 10. 23. 부터 2017. 10. 27.까지 ○○지역본부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3] 현 지 조 치 (처 분) 서

□ 제 목: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연기(서면) 처리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 신청 업무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의 연기(서면)신청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수수료의 반환)에 따르면 “현장 여건상 수목, 장애물 등 현장사정으로 인하여 측량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의뢰인의 사정으로 지적측량이 측량일 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며, 의뢰인이 서면<sup>9)</sup>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연기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표]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연기 처리 현황(기준일: 2017. 10. 17.)

접수일자	측량종목	접수번호	수수료 (부가세포함)	소재지	측량예정일	연기구분	초과기간	연기사유	측량팀장
2017-05-01	경계복원	339	420,200	♠♠	2017-05-02	전화통화	170일	입회불가 수목제거	
					2017-05-16	전화통화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미결업무 현황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지적측량업무 1건 420,200원에 대하여 장기간 연기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서면연기를 받지 않고 유선으로 연기요청을 받아 지적측량업무를 장기간 미결업무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지적측량 취소 및 반환조치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장기간 미결업무로 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글씨를 쓴 지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 ●●지사장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라 반환 또는 행정적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장기 미결업무 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8.

2017. 10. 17. 부터 2017. 10. 18.까지 ○○지역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4] 현 지 조 치 ( 처 분 ) 서

□ 제 목: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처리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측량 정보의 체계적 축적을 위해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 서류를 지적측량현장지원 시스템(이하 ‘MOS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지사장이 주요점검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있다.

「업무규정」 제19조 제1항 및 제21조에 따르면 “측량자는 측량이 완료되면 수수료 금액을 산출·정산하고, 지적측량결과도 등 관련 서류에 날인한다. 이 경우 도면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 날인 또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는 지사장이 주요점검 사항에 대하여 도면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검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적측량결과도 및 성과도를 도상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MOS 사용자 매뉴얼”(2014. 7. 23.) 취소반환 성과검사에 따르면 의뢰인의 취소 요구로 측량수수료 70%, 100%(성과제시불능 등)를 반환한 업무는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인 측량준비도 파일, 자료조사(과거 측량기록이 있는 경우의 당해 측량파일 등)와 같은 제반 준비 자료를 MOS시스템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측량 의뢰인의 요구로 취소 및 성과제시불능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성과물을 MOS시스템에 등록하여 반환에 따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성과검사 누락) 현황(기준일: 2017. 10. 17.현재)

구분	업무종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반환일자	토지소재지	반환율	측량자	비고
1	경계복원	50	2017-01-16	2017-01-25	◆◆	100%		성과제시불능
2	경계복원	626	2017-09-04	2017-09-25	◆◆	70%		본인취소
3	분할측량	22	2017-01-01	2017-01-12	◆◆	70%		본인취소
4	분할측량	245	2017-07-18	2017-08-17	◆◆	70%		본인취소
계					4건			

※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 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2017.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접수 취소된 성과제시불능 및 본인취소 업무 4건에 대하여 취소(반환)한 시점까지 수행된 작업공정이 반영된 측량성과물(결과도 ZIP파일, GDB 등)을 MOS시스템에 등록하여 측량성과검사를 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처리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 ●●지사장은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처리에 따른 미등록 성과물 4건을 등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측량수수료 반환처리에 따른 성과물 등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8.

2017. 10. 17. 부터 2017. 10. 18.까지 ○○지역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5]현 지 조 치 서

□ 제 목: 최종퇴실점검부 작성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최종 퇴실자가 전열기구 및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최종퇴실점검부에 기록하는 등 보안관리를 이행하고 있다.

「보안업무지침」 제47조(보호구역의 경계) 제3항에 따르면 “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 퇴실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게 하여야 하며, 최종 퇴실자는 최종퇴실점검부에 의하여 점검·기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별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태관련 수기장부(특근명령부, 외출부, 최종퇴실점검부 및 유연근무신청)를 폐지하고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으로 등록 관리<sup>10)</sup>할 수 있도록 하여 2015. 7. 1.부터 시행하였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퇴실하는 직원은 전열기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ERP시스템에 최종퇴실점검부를 작성한 후 퇴실하여야 한다.

### [표] 최종퇴실 점검 및 점검부 미 작성 현황

(○○지역본부 ◎◎지사)

(2017. 1. 1. ~ 10.18.)

점검일자	점검시간	요일	점검여부	점검자	최종퇴실자	최종퇴실시간	비고
2017-01-14	-	토요일	미작성	-	○○○	18:02	
2017-03-01	-	수요일	미작성	-	○○○	16:05	
2017-03-11	-	토요일	미작성	-	○○○	15:42	
2017-07-29	-	토요일	미작성	-	○○○	10:14	

10) 특근명령부, 외출부 및 유연근무제 신청 등 erp 근태관리 알림(☐☐☐☐실-5445: 2015. 6. 16.)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현황과 같이 최종 퇴실자가 보안유지를 위하여 보안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최종퇴실점검부에 점검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는데도 2017. 1. 1.부터 10.18. 현재 총 4회에 걸쳐 최종퇴실점검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 ◎◎지사장은 미작성된 최종퇴실점검부를 작성토록하시고 「보안업무지침」 등 관련 제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종퇴실점검부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20.

2017.10.19. 부터 2017.10.20.까지 ○○지역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6]현 지 조 치 서

□ 제 목: 법인카드 사용 및 예산과목 적용 소홀

□ 확인 내용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업무 수주 및 협의를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2017년 예산집행지침」 4. 목별 세부지침 사. 업무추진비(11p)에 “사업추진비는 공사의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자료수집·조사 활동 및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에 집행하고, 기관운영비는 내부직원 격려, 간담회, 기타 기관(부서)운영을 위한 소규모 지출 등의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하되 배정된 예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제7조(카드전표 및 서명)에는 “법인카드 사용 시 카드전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LX와 함께 사용자의 실명을 정자로 서명하되, 서명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전표의 여백에 실명을 정자로 기재한다.” 고 되어있다.

[표] 업무추진비 착오 적용 현황

사용일	예산명(오)	예산명(정)	집행자	집행대상	집행목적	사용금액
2017.06.07.	사업추진비	기관운영비	○○○	지사장 외 16	지사 직원 회식	485,000
2017.06.26.	기관운영비	사업추진비	○○○	건설교통과 외 6	도천 법사지도로 관련 업무 협의	97,000
2017.06.27.	사업추진비	기관운영비	○○○	지사장 외 17	상반기 지사 직원 회식	482,000
2017.07.26.	사업추진비	기관운영비	○○○	지사장 외 15	직원 회식	332,000

그러나 위 [표] 착오 적용 현황과 같이 사업추진비와 기관운영비를 착오 적용하였으며, 법인카드 사용 시 카드전표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LX와 함께

사용자의 실명을 정자로 서명하되, 서명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전표의 여백에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대다수의 전표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등 법인카드 사용 및 업무추진비 예산계정과목 적용에 소홀하였다.

####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 ▷▷지사장은 법인카드 사용 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LX와 함께 사용자의 실명을 정자로 기재하도록 하시고 착오 적용된 예산과목을 정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지침」 및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등 관련 제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인카드 및 예산집행과목 적용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8.

2017.10.17. 부터 2017.10.18.까지 ○○지역본부 ▷▷지사에게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7-7]현 지 조 치 (처 분) 서

□ 제 목: 지적측량종목변경 업무 처리 소홀

□ 내 용

○○지역본부 ♣♣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에서는 고객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업무종목을 변경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제2항11)에 따르면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 종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변경된 업무종목의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업무종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종목변경신청서를 징구하여 종목변경을 처리해야 하고, 종목이 변경된 업무에 대하여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편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표] 지적측량의뢰서 미출력 현황(2017. 1. 1. ~ 2017. 9. 30. 현재)

구분	접수내역				종목변경			지적측량의뢰서
	종목	번호	일자	토지소재지	종목	번호	일자	
일반	등록전환	13	2017-04-14	♣♣	지적현황	154	2017-06-12	미출력
일반	등록전환	14	2017-04-18	♣♣	지적현황	153	2017-06-12	미출력
일반	등록전환	20	2017-05-08	♣♣	지적현황	138	2017-05-26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9	2017-01-01	♣♣	지적현황	5	2017-01-04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1	2017-01-01	♣♣	지적현황	16	2017-01-19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95	2017-02-22	♣♣	지적현황	49	2017-03-13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97	2017-02-23	♣♣	경계복원	223	2017-03-15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62	2017-03-24	♣♣	지적현황	105	2017-04-27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175	2017-03-30	♣♣	지적현황	99	2017-04-25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235	2017-04-25	♣♣	지적현황	106	2017-04-28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237	2017-04-27	♣♣	지적현황	155	2017-06-14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17	2017-06-05	♣♣	지적현황	177	2017-07-05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26	2017-06-07	♣♣	지적현황	215	2017-09-07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371	2017-06-27	♣♣	지적현황	184	2017-07-18	미출력
일반	분할측량	440	2017-08-10	♣♣	지적현황	212	2017-08-29	미출력

11) 「업무규정시행규칙」 제19조(접수 및 정산) ② 정산결과 수량 또는 금액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알려 추가수입 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하고, 업무종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업무종목으로 이기하며, 종목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변경된 업무종목은 의뢰서를 출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추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추가분에 대한 의뢰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및 입금표를 발급한다.

구분	접수내역				종목변경			지적측량 의뢰서
	종목	번호	일자	토지소재지	종목	번호	일자	
일반	분할측량	485	2017-09-11	♠♠	지적현황	232	2017-09-26	미출력
일반	경계복원	221	2017-03-14	♠♠	지적현황	78	2017-04-08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46	2017-03-09	♠♠	경계복원	233	2017-03-17	미출력
일반	지적현황	192	2017-08-01	♠♠	경계복원	680	2017-08-11	미출력

\* 자료: 지적측량업무지원시스템(COS) 종목변경 현황 조회 재구성

그런데도 위 지사에서는 [표] ‘지적측량의뢰서 미출력 현황’과 같이 업무종목이 변경된 19건에 대하여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하여 편철·보관하지 않는 등 종목 변경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종목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누락되어 지적측량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 □ 조치할 사항

○○지역본부 ♣♣지사장은 종목변경에 따른 미출력된 지적측량의뢰서를 출력,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규정시행규칙」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종목변경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19.부터 2017. 10. 20.까지 ○○지역본부 ♣♣지사에 대한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현지조치 요구하니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종료일 이전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랍니다.

※ 단, 본 조치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감사기준시행세칙」 제36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 10. 20.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 감사반장 ○○○ (인)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89
제 목	내부고객 만족 향상을 위해 측량(전산)장비 대체 장비 활용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 5급 ○○○
분 야	예산절감, 업무효율

## □ 요 지

- 측량장비(토탈스테이션과)와 전산장비(펜컴퓨터) 고장 수리에 대비한 대체 장비 배부로 내·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 □ 내 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조에 의거 토탈스테이션, GNSS, 레벨은 3년 마다 성능검사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장비는 측량장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2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 중
  - 매월 각 지사별로 1대 이상의 측량장비 성능 검사로 권역별(4개권역\_동부, 중부, 서부, 남부)로 지원으로 대체 장비 배치로 시간 및 인력 낭비가 심함.
  - 수리 대체 장비를 지사별로 1대씩으로 배치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지적측 업무처리기간 단축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
- 전산장비(펜컴퓨터) 고장 수리 대체 장비 배부
  - 고장수리 장비에 대하여 본부 또는 AS센터로 수리 요청 후 대체 장비 지원으로 후속 측량을 실시 할 수 있게 지사별 배치(18대)
- 전산장비(펜컴퓨터\_GETAC B300) 키보드 수리 킷 배부(보유수량 27대)
  - 2013.05.23.구입 배부한 전산장비(펜컴퓨터\_GETAC B300)의 노후화로

키보드의 균열 및 불량으로 전문업체 수리 시 과도한 수리비 발생  
 - 전문업체에 의한 1대당 수리비(100,000원)를 수리 키(1,100원)으로  
 대체하여 예산절감(1/10)의 효과 발생

전문업체 수리비					수리키트 구매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th> <th>품명</th> <th>수량</th> <th>단가</th> <th>합계</th> </tr> <tr> <th>Product</th> <th>Product Description</th> <th>Qty</th> <th>Unit Price</th> <th>Amount Price</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 Getac_B300 Rugged Notebook</td> </tr> <tr> <td>Model</td> <td>B300 ( RD463B0370 )</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Materials cost</td> </tr> <tr> <td></td> <td>1. USB+ESATA BD</td> <td>1</td> <td>143,000</td> <td>143,000</td> </tr> <tr> <td></td> <td>2. Keyboard</td> <td>1</td> <td>100,000</td> <td>100,000</td> </tr> </tbody> </table>					품목	품명	수량	단가	합계	Product	Product Description	Qty	Unit Price	Amount Price	■ Getac_B300 Rugged Notebook					Model	B300 ( RD463B0370 )				Materials cost						1. USB+ESATA BD	1	143,000	143,000		2. Keyboard	1	100,000	100,000	 <p>한글 자판 스티커/고강도원단/고품질 인쇄와 내구성  <b>1,080원</b> <del>1,100원</del> <span style="color:red">7%</span></p> <p>1,020원 (국민카드) 청구할인카드 더보기 ? <span style="float:right">TOP</span></p>				
품목	품명	수량	단가	합계																																								
Product	Product Description	Qty	Unit Price	Amount Price																																								
■ Getac_B300 Rugged Notebook																																												
Model	B300 ( RD463B0370 )																																											
Materials cost																																												
	1. USB+ESATA BD	1	143,000	143,000																																								
	2. Keyboard	1	100,000	100,000																																								



□ 기대효과

- (내부고객) 측량(전산)장비 신속 지원으로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
- (외부고객) 지적측량 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외부 고객 만족도 향상
- (성능검사) 측량장비 성능검사 입고 및 검사 기간 단축으로 신뢰성 확보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0
제 목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지원체계 운영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 6급 ○○○
분 야	업무효율

## □ 요 지

- 측량업무 처리지연으로 인한 고객불편 최소화로 고객만족도 향상
- 지적측량 업무량 증가에 따른 미결업무의 효율적 처리
- 지사 간 집중 지원을 통한 협업 노력 강화 및 업무 강도 평준화

<b>위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시기(업무성수기)에 접수량 폭주</li> <li>- 일반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추세 (국가 항공산업단지 조성 확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불법산지 전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등)</li> <li>- 직원의 업무 노동 강도 상승</li> <li>- 2017년 9월 30일 기준 일반업무 출장 전 미결건수 992건</li> </ul>
<b>전략방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peed-Up 지원팀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규정 제15조 (업무종사의 한계) ④항</li> <li>·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측량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역본부내의 권역을 정하여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li> <li>- 본부 1팀, 지사 19팀 지정 운영</li> <li>- 권역구성 ⇒ 3개 권역으로 편성</li> </ul> </li> <li>○ 미결업무 해소를 위한 자체 지원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로 일자를 특정하여 지사별 측량지원팀 사전 배정</li> <li>- 지사 규모에 따라 측량지원 배정팀을 결정하고 업무지원 준비</li> <li>- 미결업무 현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li> <li>- 업무지원이 불필요할 경우 소속 지사 업무 수행</li> </ul> </li> </ul>

□ 제도 운영에 따른 실적 향상

○ 전년 동기간 대비 업무이관 실적 현황

구분	건수	수량(필)	금액(백만 원)
2016년 1월~9월	827	1,681	584
2017년 1월~9월	1,524	2,290	859
<b>증감</b>	<b>697</b>	<b>609</b>	<b>275</b>

○ 전년 동기간 대비 일반업무 완료 실적 현황

구분	건수	수량(필)	금액(백만 원)
2016년 1월~9월	28,403	58,693	20,270
2017년 1월~9월	30,401	61,031	20,896
<b>증감</b>	<b>1,998</b>	<b>2,338</b>	<b>626</b>

※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완료 실적 33억 원(5.2%) 향상

□ 기대효과

- (목표달성) 업무처리 실적 향상으로 2017년 목표량 초과 달성 기여
- (협력체계) 지사 간 즉각적인 업무이관 및 인력지원으로 협력 문화 정착
- (고객만족) 업무처리기간 단축으로 내·외부 고객만족 및 경영성과 향상

□ 향후계획

- 지사별 업무추진현황 상시 모니터링 실시
- 미결업무 해소를 위한 자체 지원체계 지속 시행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1
제 목	지적(공간정보)업무 발전을 위한 소관청과의 정기 정담회 시행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5급 ○○○
분 야	업무효율 및 홍보

## □ 요 지

- 개방·공유·소통을 통한 협력 및 상생 방안 마련
- 지속가능 미래성장을 위한 지적업무 발전방향 모색
- 공사의 주요업무 추진 설명 및 협조 요청
- 공간정보사업 확산 인프라 구축 위한 공감대 형성

## □ 내 용

- 지적소관청과의 정기 정담회 시행
  - 매월 1회(지사 여건에 따라 요일 및 시간 자율적 설정)
  - 대단위 특수업무(지적재조사, 확정측량 등)의 추진 현황 공유
  - 지적측량서비스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협력 강화
  
- ○○도내 지적담당 사무관들과의 지적(공간정보)업무발전 정담회 개최
  - 2017. 11. 8.(수) 개최 예정
  - ○○도청 ◆◆과장 외 25명, ○○지역본부장 외 27명
  - 지적업무 발전방향 등에 관한 자유 토론
  - 공사 주요업무 설명 및 업무 협조 요청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공간정보사업 소개
  - 동영상 시청(공사홍보 영상,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등)

## □ 기대효과

-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유기적 업무환경 조성
- 2017년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관련 업무 협조
- 미래성장을 위한 지적업무 발전방향 모색
- 공사 공간정보사업의 소개에 의한 지자체 공감대 형성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2
제 목	◎◎시 공간정보기반 ICT 신기술 협력사업 추진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국토정보직 5급 ○○○
분 야	업무효율, 신규사업 등

## □ 요 지

-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UAV, 빅데이터 등 공간정보 활용
- ICT 융·복합 사업의 지속 발굴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지속적 안정적인 미래 신기술 적용사업 추진

## □ 내 용

### ◎◎시-한국국토정보공사 MOU를 통한 사업 추진

**김해시-한국국토정보공사, ICT 사업 MOU 체결**  
 드론, 빅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 융·복합 사업 협업 추진

GNNNEWS 강우권 기자 / 2017.02.28 14:3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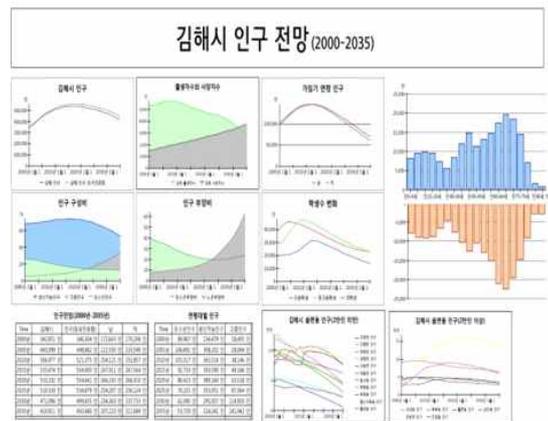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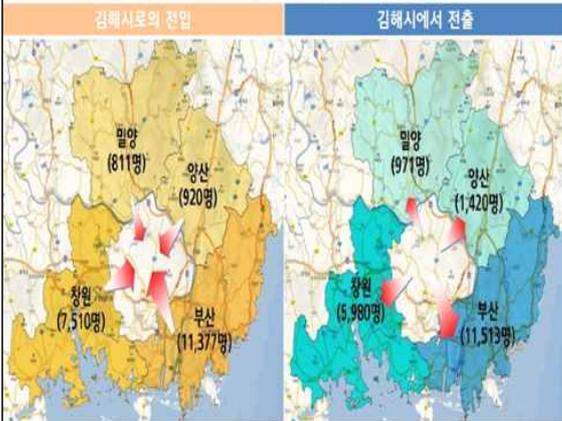


▲28일 허성곤 김해시장과 유은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 본부장이 김해시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해시)

## 1. ◎◎시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미래예측 모델링 분석

김해시의 전입전출(2015) 창원에서 인구 유입  
부산, 양산, 밀양으로 인구 유출

추세적 변화기반 인구모형



- ▶ 2035년까지 ◎◎시 인구·가구·주택·지역경제의 미래 변화 전망
- ▶ 인구감소, 지역성장한계, 빈집 등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 인구 동태 및 이동 분석을 통하여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 2. ◎◎시 문화재 3D 정밀데이터 구축 사업



- ▶ UAV, 3차원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문화재 3D 정밀데이터 구축
- ▶ 가야 유적지의 보호와 원형 복구자료 활용
- ▶ 문화재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통계, 분석, 시각화

### □ 기대효과

- 신기술 활용을 통한 새로운 국토정보 모니터링사업 분야 확대
-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의 공간정보 전담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 됨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3
제 목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사 홍보 및 사회공헌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처 / 기획경영직 7급 ○○○
분 야	홍보, 사회공헌

## □ 요 지

- 사명변경 및 업무영역 확장으로 인해 공사 및 본부 홍보 중요성 증대
- TBN교통방송, CJ헬로비전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 홍보 추진
- 홍보 외에도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 □ 내 용

- CJ헬로비전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사(지역본부) 및 공간정보사업 홍보
  - 기관장 인터뷰 및 공간정보사업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 TBN교통방송 교통통신원 활동을 통한 공사 대국민 인지도 향상
  - 교통통신원 제도 본사 및 전국 지역본부 확대를 통해 공사 인지도 향상
- 지역 사회적 기관에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혈액원(헌혈), 성산종합사회복지관(도시락 배달 봉사 및 기부 등), 아름다운 가게(헌 옷기부) 등에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봉사

## □ 기대효과

-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사 및 신사업 홍보가 가능하여 공사 인지도 제고
- 교통통신원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관련사진



본부장 공사 홍보 인터뷰



반부패·청렴 윤리경영 워크숍 방송



'아름다운 가게'에 헌 옷 기부



기부 및 봉사활동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4
제 목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5급 ○○○
분 야	고객만족도향상

## □ 요 지

- 20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하락
- 신속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불만고객 발생
-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도출

## □ 내 용

-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 팀별 단축일수를 기준으로 마일리지에 시행
  - 지적측량 조기집행 통지서 발송 및 사전약속
  - 2017년 2월부터 103건의 조기집행으로 총 711일 평균 118.5일 단축 실적을 나타냄

## 팀별 민원처리 마일리지

번호	임경원			신영수			박종근			임장민			박준재			최자환		
	당초측량 예정일자	조 기 집행일	단축 일수															
합 계			295			9			20			57			171			159
1	17-2-20	17-2-16	4	17-4-4	17-3-28	7	17-4-6	17-3-29	8	17-4-4	17-3-29	6	17-3-24	17-3-22	2	17-4-10	17-4-6	4
2	17-2-21	17-2-20	1	17-4-19	17-4-18	1	17-4-24	17-4-12	12	17-4-18	17-4-12	6	17-3-21	17-3-10	11	17-4-13	17-4-6	7
3	17-3-9	17-3-7	2	17-4-19	17-4-18	1			-	17-6-1	17-5-30	2	17-3-27	17-3-22	5	17-4-18	17-4-17	1
4	17-3-15	17-3-10	5			-			-	17-6-23	17-6-20	3	17-4-4	17-3-31	4	17-4-24	17-4-20	4
5	17-3-22	17-3-20	2			-			-	17-7-4	17-6-23	11	17-4-5	17-4-3	2	17-5-10	17-4-26	14
6	17-3-30	17-3-21	9			-			-	17-7-5	17-6-27	8	17-4-10	17-4-4	6	17-5-11	17-5-8	3
7	17-4-4	17-3-28	7			-			-	17-7-7	17-6-29	8	17-4-7	17-4-5	2	17-6-21	17-6-9	12
8	17-4-10	17-3-31	10			-			-	17-9-6	17-8-24	13	17-4-14	17-4-6	8	17-6-14	17-6-9	5
9	17-4-12	17-4-5	7			-			-			-	17-4-7	17-4-6	1	17-6-22	17-6-14	8
10	17-4-10	17-4-5	5			-			-	17-4-11	17-4-7	4	17-4-11	17-4-7	4	17-6-16	17-6-15	1
11	17-4-26	17-4-19	7			-			-			-	17-4-20	17-4-18	2	17-7-21	17-7-17	4
12	17-4-28	17-4-25	3			-			-			-	17-5-10	17-4-17	23	17-8-9	17-7-25	15
13	17-5-11	17-4-27	14			-			-			-	17-5-16	17-5-10	6	17-8-7	17-7-28	10
14	17-5-8	17-4-28	10			-			-			-	17-5-16	17-5-11	5	17-8-21	17-8-3	18
15	17-5-16	17-4-28	18			-			-			-	17-6-19	17-6-14	5	17-8-22	17-8-7	15
16	17-5-23	17-5-15	8			-			-			-	17-6-19	17-6-13	6	17-9-7	17-8-28	10
17	17-5-23	17-5-16	7			-			-			-	17-6-30	17-6-23	7	17-9-13	17-9-5	8
18	17-5-24	17-5-22	2			-			-			-	17-7-7	17-6-30	7	17-9-12	17-9-7	5
19	17-5-24	17-5-22	2			-			-			-	17-7-11	17-7-4	7	17-9-13	17-9-8	5
20	17-5-30	17-5-26	4			-			-			-	17-7-6	17-7-5	1	17-10-30	17-10-20	10

팀장명	건수	단축일수	건수점수* 마일리지	일수점수** 마일리지	평균
		103	711	26.5	36.5
	43	295	11.0	15.0	13.0
	3	9	1.0	0.5	0.8
	2	20	0.5	1.0	0.8
	8	57	2.0	3.0	2.5
	27	171	7.0	9.0	8.0
	20	159	5.0	8.0	6.5

\* 건수점수 : 4건당 1점으로 부여

\*\* 일수점수: 10일 0.5점으로 부여

#### □ 기대효과

- 측량일자 지정에 따른 불만고객 사전해소로 고객만족도향상
- 전 직원 고객만족경영 마인드 향상
-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체계 강화

# 모범사례

일련번호	2017-95
제 목	기관협업을 통한 공간정보사업 시장확대
기관 / 작성자	○○지역본부 ▷▷지사 / 국토정보직 5급 ○○○
분 야	홍보 및 업무수주

## □ 요 지

-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공간정보사업의 적극적 사업제안과 마케팅 활동으로 연결용지도사업 및 지적재조사 UAV영상촬영 사업수주

## □ 내 용

- 제45호선 ◀◀~▷▷간 고속국도 보상을 위한 UAV 정밀영상촬영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UAV 정밀영상촬영업무

## □ 기대효과

- UAV 정밀영상촬영을 통한 공사 신뢰도 향상
- UAV활용 지적재조사지구 모니터링을 통한 민원해소
- 변화된 제도의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제공으로 공사위상강화

## □ 향후계획

- 2018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정밀영상촬영 업무 수주
- ◯◯~○○간 고속도로 보상업무 UAV 촬영 업무 수주
- 가야문화재청 관리업무 ▷▷ 문화재 UAV 촬영업무 마케팅

### UAV정밀영상사진



### 지적재조사 사업 촬영



창녕군은 부곡면 수다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